- 제21장 측 량 -

2009. 1

국 토 해 양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18 항공사진촬영	보완	2. 월별천후표	2. 월별천후표	-기상청의 최근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월별천후표의 쾌청일수 자료를 보완

현 행

지역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춘천	(6)	(7)	5	6	3	2	1	1	2	2	4	(5)	44
강릉	(11)	(7)	(4)	4	3	2	1	1	2	5	9	9	58
서울	(8)	(7)	5	6	3	2	0	1	3	7	6	(7)	55
인천	(8)	(7)	6	6	3	2	0	1	4	8	6	(7)	58
울릉도	(2)	(1)	(2)	5	3	2	2	1	1	3	(3)	(2)	27
수원	(8)	(7)	6	6	4	1	1	2	4	9	6	(7)	61
청주	(6)	(5)	6	6	4	2	1	2	3	6	5	(5)	51
추풍령	(5)	(5)	(6)	6	4	2	1	1	3	6	7	(6)	52
포항	(10)	7	6	6	5	1	1	2	2	6	11	(12)	69
대구	(10)	(7)	6	6	4	2	0	1	2	6	9	(10)	63
전주	(5)	(4)	6	5	5	2	1	2	4	8	6	(5)	53
울산	(10)	(7)	5	4	4	2	1	2	2	6	10	(12)	65
광주	(2)	(2)	3	4	2	1	0	1	2	6	5	(4)	32
부산	9	6	5	4	3	1	1	2	3	7	10	12	63
목포	(2)	(2)	4	5	5	1	2	2	4	7	5	(4)	43
여수	(10)	(7)	6	6	4	2	2	4	4	9	10	(10)	74
제주	0	(1)	2	4	4	1	2	1	2	2	3	(2)	24
서귀포	(1)	(2)	3	3	3	1	1	1	3	6	5	3	32
속초	(11)	(7)	(4)	6	3	2	0	1	2	6	7	(9)	58
철원	(9)	(6)	(4)	5	3	1	0	1	2	7	6	(7)	51
원주	(8)	(6)	4	5	3	2	1	1	3	4	6	(6)	49
서산	(4)	(5)	6	6	5	2	1	2	4	8	(4)	(4)	51
울진	(12)	(8)	5	6	3	2	2	2	3	6	9	12	70
대전	(5)	(4)	6	5	4	2	0	2	3	7	5	(5)	48
안동	(8)	(8)	(6)	7	4	2	1	2	1	4	7	(8)	58
군산	(4)	(3)	6	5	4	2	1	2	4	7	(5)	(4)	47
통영	9	7	5	4	3	1	2	1	3	7	10	10	62
완도	(4)	(3)	5	5	4	1	1	2	4	8	6	(5)	48
진주	(9)	(7)	6	5	3	1	1	0	1	4	6	9	52

[주] ① 이 표의 숫자는 쾌청일수를 말하며 단지 구름의 <u>양이 1.0이하를</u> 기준한 기상 통계이므로 사진촬영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겨울철의 적설, 도심지역의 연무 현상 및 산악지대의 태양각 등의 특수 지상조건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 사진축척에 따른 실제 비행고도 및 비행기의 종류를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③ 이 표에서 ( )에 표시된 숫자는 월간 3일이상 적설이 있는 달의 쾌청일수를 말한다.
④ 이 표의 쾌청일수는 1일 <u>4회(3시, 9시, 15시, 21시)의 관측치를 평균한 1985~1994의 기상월보(기상청 발행)의 통계</u>이며, 운항체류일수의 계산에 활용한다.
⑤ 이 표에 명시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는 가장 가까운 지구의 표를 활용할 수 있다.

개 정

지역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춘천	(8)	(8)	5	3	3	3	0	1	1	2	4	(7)	45
강릉	(10)	8	5	4	4	2	1	1	2	5	9	11	62
서울	(9)	7	5	5	4	2	0	1	2	8	7	(8)	58
인천	(9)	7	5	5	5	2	0	2	3	8	7	(8)	61
울릉도	(1)	(1)	(2)	3	4	2	1	1	1	2	1	0	19
수원	(9)	7	5	5	5	2	0	1	3	6	6	(8)	57
청주	(4)	(6)	5	4	5	2	0	0	1	5	5	(4)	41
추풍령	(4)	(5)	4	5	4	2	0	0	2	5	5	(5)	41
포항	11	8	6	5	4	2	1	2	1	5	10	11	66
대구	9	8	5	5	4	2	0	1	2	6	7	9	58
전주	(4)	(5)	4	5	4	3	0	0	2	6	6	(4)	43
울산	11	8	5	6	4	2	2	1	2	6	10	11	68
광주	(3)	(4)	4	5	4	2	0	0	2	7	5	(3)	39
부산	11	9	6	6	5	2	2	2	3	7	11	13	77
목포	(1)	(3)	3	5	4	2	0	0	2	6	5	(3)	34
여수	9	8	7	7	5	2	2	2	3	7	10	8	70
제주	1	1	2	4	3	1	0	0	1	2	3	1	19
서귀포	0	3	2	4	3	1	0	0	1	4	3	2	23
속초	(11)	8	5	4	3	2	1	1	2	6	9	10	62
철원	(9)	(7)	5	4	3	2	0	1	2	6	7	(8)	54
원주	(8)	(7)	5	3	4	2	0	0	1	5	6	(7)	48
서산	(2)	(4)	4	5	4	2	0	0	2	5	4	(2)	34
울진	11	8	5	5	4	3	1	2	2	5	9	11	66
대전	(5)	6	5	5	5	2	0	1	2	6	5	(5)	47
안동	(10)	8	5	5	5	2	1	0	0	3	5	9	53
군산	(2)	(4)	4	5	4	1	0	0	1	5	4	(3)	33
통영	11	9	6	5	4	2	2	2	3	7	11	11	73
완도	(3)	4	3	5	5	2	0	1	3	7	7	5	45
진주	10	9	6	5	4	1	1	1	1	6	8	9	61

[주] ① 이 표의 숫자는 쾌청일수를 말하며 단지 구름의 <u>양이 1.0(구름양 10%)이하를</u> 기준한 기상 통계이므로 사진촬영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겨울철의 적설, 도심지역의 연무 현상 및 산악지대의 태양각 등의 특수 지상조건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 사진축척에 따른 실제 비행고도 및 비행기의 종류를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③ 이 표에서 ( )에 표시된 숫자는 월간 3일 이상 적설이 있는 달의 쾌청일수를 말한다.
④ 이 표의 쾌청일수는 <u>1일 8회의 관측치를 평균한 1999~2007의 기상청 통계</u>이며, 운항체류일수의 계산에 활용한다.
⑤ 이 표에 명시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는 가장 가까운 지구의 표를 활용할 수 있다.

-통계기준 명시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22 세부도화	보완			

현 행

21-22 세부도화

1. 인원편성

종별	기술자				기능사(도화)			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고급	중급	초급	
참여비율(%)	5	5	10	10	5	40	25	100

2. 축척별 작업량

도화축척	1/500	1/1,000	1/2,500	1/5,000	1/25,000	비 고
1시간당작업량(㎢)	0.0028	0.0084	0.0210	0.0665	0.4536	

[주] ① 본 품은 계획준비, 작업관리, 기준점전개, 도화기 표정, 도화작업, 인접부접합 및 정리점검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② 세부도화작업은 ①항의 작업공정에 따라 투명양화필름 및 기준점 측량성과를 기초로 정밀도화기에 의해 원도지 상에 지형을 묘사하여 도화원도를 제작함을 말한다.

③ 세부도화원도지는 신축비가 0.05%이내의 "폴리에스텔필름"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도화축적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본 품은 일반 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특수도 제작에서는 별도품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표준모델수라 함은 작업량을 모델 유효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⑦ 현지점검측량, 현지조사 및 원도의 착묵제도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⑧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도화기의 상각년수 8년, 연가동일수는 278일로 한다.

㉯ 도화기의 가동일당 정비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 정비비)=(취득가격)/<연간 가동일수>×0.025

⑨ 사진축척과의 비율, 지형 및 도화작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도화비율에 따른 계수

도화축척 \ 도화비율	1:10	1:8	1:6	1:5	1:4	1:3	1:2	1:1
1/500~1/1,000	1.11	1.00	0.90	-	0.83	-	0.71	-
1/2,500~1/5,000	-	-	-	1.11	1.00	0.90	0.76	0.58
1/25,000	-	-	-	-	1.25	1.11	1.00	0.76

개 정

21-23 세부도화

1. 인원편성

종별	기술자				기능사(도화)			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고급	중급	초급	
참여비율(%)	5	10	15	10	10	30	20	100

2. 축척별 작업량

도화축척	1/500	1/1,000	1/2,500	1/5,000	1/25,000	비 고
1시간당작업량(㎢)	0.0028	0.0084	0.0210	0.0665	0.4536	

[주] ① 본 품은 계획준비, 작업관리, 기준점전개, 도화기 표정, 도화작업, 인접부접합 및 정리점검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② 세부도화작업은 ①항의 작업공정에 따라 투명양화필름 및 기준점 측량성과를 기초로 정밀도화기에 의해 원도지 상에 지형을 묘사하여 도화원도를 제작함을 말한다.

③ 세부도화원도지는 신축비가 0.05%이내의 "폴리에스텔필름"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본 품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도화축적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본 품은 일반 지형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특수도 제작에서는 별도품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표준모델수라 함은 작업량을 모델 유효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⑦ 현지점검측량, 현지조사 및 원도의 착묵제도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 계상한다.

⑧ 기계비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상각비계상은 장비취득가격의 10%를 잔존가치로 하며, 도화기의 상각년수 8년, 연가동 일수는 278일로 한다.

㉯ 도화기의 가동일당 정비비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동일당 정비비)=(취득가격)/<연간 가동일수>×0.025

⑨ 사진축척과의 비율, 지형 및 도화작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 도화비율에 따른 계수

도화축척 \ 도화비율	1:10	1:8	1:6	1:5	1:4	1:3	1:2	1:1
1/500~1/1,000	1.11	1.00	0.90	-	0.83	-	0.71	-
1/2,500~1/5,000	-	-	-	1.11	1.00	0.90	0.76	0.58
1/25,000	-	-	-	-	1.25	1.11	1.00	0.76

비 고

-항목번호를 공정 순서대로 사진기준점측량과 변경

-신기술에 따른 장비사용과 품질관리 등으로 기술요인이 증가하여 기술계 인력이 상향 조정됨

-인력비율 변경으로 인한 소요비용은 기존 비용 의 104.3% 수준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22 세부도화	보완			

현 행

㉯ 지형에 따른 계수

지형종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계 수	0.58	0.78	1.00	1.20	1.40

㉰ 도화작업의 종류에 따른 계수

도화작업의 종류	도 화	수정도화
계 수	1.0	0.8

⑪ 작업지역의 모델수가 표준모델수의 120% 이상일때는 다음의 모델 표정시간을 가산한다.

{전체모델수-(표준모델수×1.2)×2시간/모델}

⑫ 수정도화 작업시 사진판독에 따른 시간은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수정 면적÷(세부도화시간당작업량×8)}시간

⑬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⑭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세부도화원도 1부 ㉯ 표정기록부 1부
㉰ 점의 조서 1부 ㉱ 기준점이 표정된 사진 1부
㉲ 측량성과표 1부

[설계예]
① 도화작업
㉮ 설계제원

(1) 사 용 기 계 : WILD A-8 정밀도화기	(5) 도 화 면 적 : 100㎢
(2) 사 진 축 척 : 1/20,000	(6) 작 업 구 역 : 농경지
(3) 도 화 축 척 : 1/5,000현황도	(7) 증 감 계 수 : 비율 1.0 및 지형 1.0
(4) 등고선간격 : 주곡선 5m,	

㉯ 설 계
㉠ 인건비

구분		세부도화	비고
기술자	특급	187×0.05=9.35	{(100㎢÷(0.0665×1.0×1.0)} ÷8hr=187
	고급	187×**0.05=9.35**	
	중급	187×**0.10=18.7**	
	초급	187×0.10=18.7	
기능사 (도화)	고급	187×**0.05=9.35**	
	중급	187×**0.40=74.8**	
	초급	187×**0.25=46.75**	
계		187	187

개 정

㉯ 지형에 따른 계수

지형종류	시가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계 수	0.58	0.78	1.00	1.20	1.40

㉰ 도화작업의 종류에 따른 계수

도화작업의 종류	도 화	수정도화
계 수	1.0	0.8

⑪ 작업지역의 모델수가 표준모델수의 120% 이상일때는 다음의 모델 표정시간을 가산한다.

(전체모델수-표준모델수×1.2)×2시간/모델

⑫ 수정도화 작업시 사진판독에 따른 시간은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수정 면적÷(세부도화시간당작업량×8)}시간

⑬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⑭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 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세부도화원도 1부 ㉯ 표정기록부 1부
㉰ 점의 조서 1부 ㉱ 기준점이 표정된 사진 1부
㉲ 측량성과표 1부

[설계예]
① 도화작업
㉮ 설계제원

(1) 사 용 기 계 : WILD A-8 정밀도화기	(5) 도 화 면 적 : 100㎢
(2) 사 진 축 척 : 1/20,000	(6) 작 업 구 역 : 농경지
(3) 도 화 축 척 : 1/5,000현황도	(7) 증 감 계 수 : 비율 1.0 및 지형 1.0
(4) 등고선간격 : 주곡선 5m,	

㉯ 설 계
㉠ 인건비

구분		세부도화	비고
기술자	특급	187×0.05=9.35	{(100㎢÷(0.0665×1.0×1.0)} ÷8hr=187
	고급	187×**0.10=18.7**	
	중급	187×**0.15=28.05**	
	초급	187×0.10=18.7	
기능사 (도화)	고급	187×**0.10=18.7**	
	중급	187×**0.30=56.1**	
	초급	187×**0.20=37.4**	
계		187	187

비 고

-오기 수정

-정부조직개편에 의한 명칭

-인원편성 변경에 따른 설계예 수정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22 세부도화	보완			

현 행

㉡ 기계비

구분	상각비	정비비	비고
도화기	187	187	

② 수정도화작업

㉮ 설계제원

(1) 사용기계 : A-8 정밀도화기	(5) 수정도화면적 : 500㎢
(2) 사진축척 : 1/20,000	(6) 입체모델수 : 500모델
(3) 도화축척 : 1/5,000	(7) 작업구역 : 농경지
(4) 수정대상지역 : 2500㎢	(8) 증가계수 : 배율 1.00 및 지형 1.00

㉯ 설 계

㉠ 인건비

구분		세부도화	비고
기술자	특급	1,860×0.05=93	표정: {500모델-(500÷5.92×1.2)} ×2시간÷8시간=99명 사진판독: 2,500㎢÷(0.0665×1.0×1.0×8)÷8시간=587명 묘사 : 500㎢÷(0.0665㎢/시간×1.0×1.0×0.8)÷8시간=1,174명
	고급	1,860×**0.05**=**93**	
	중급	1,860×**0.10**=**186**	
	초급	1,860×0.10=186	
기능사(도화)	고급	1,860×**0.05**=**93**	
	중급	1,860×**0.40**=**744**	
	초급	1,860×**0.25**=**465**	
계		1,860	1,860

㉡ 기계비

구분	상각비	정비비	비고
도화기	1,273	1,273	기계사용일수 = 표정일수 + 묘사일수

개 정

㉡ 기계비

구분	상각비	정비비	비고
도화기	187	187	

② 수정도화작업

㉮ 설계제원

(1) 사용기계 : A-8 정밀도화기	(5) 수정도화면적 : 500㎢
(2) 사진축척 : 1/20,000	(6) 입체모델수 : 500모델
(3) 도화축척 : 1/5,000	(7) 작업구역 : 농경지
(4) 수정대상지역 : 2500㎢	(8) 증가계수 : 배율 1.00 및 지형 1.00

㉯ 설 계

㉠ 인건비

구분		세부도화	비고
기술자	특급	1,860×0.05=93	표정: {500모델-(500÷5.92×1.2)} ×2시간÷8시간=99명 사진판독: 2,500㎢÷(0.0665×1.0×1.0×8)÷8시간=587명 묘사 : 500㎢÷(0.0665㎢/시간×1.0×1.0×0.8)÷8시간=1,174명
	고급	1,860×**0.10**=**186**	
	중급	1,860×**0.15**=**279**	
	초급	1,860×0.10=186	
기능사(도화)	고급	1,860×**0.10**=**186**	
	중급	1,860×**0.30**=**558**	
	초급	1,860×**0.20**=**372**	
계		1,860	1,860

㉡ 기계비

구분	상각비	정비비	비고
도화기	1,273	1,273	기계사용일수 = 표정일수 + 묘사일수

비 고

-인원편성 변경에 따른 설계예 수정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24 수치 지도 작성	보완	1. 수치도화 사진축척별 작업량 사진축척 / 1/3,000 / 1/5,000 / 1/10,000 / 1/20,000 / 1/37,500 시간당작업량 / **0.0016** / **0.0048** / **0.0132** / **0.0419** / **0.2858** [주] ① 수치도화라 함은 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을 수치도화기로 지형지물을 수치형식으로 측정하여 이를 컴퓨터에 수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본 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진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인원편성, 지형상 증가계수, 도화작업의 종류에 따른 증감계수는 "21-22 세부도화"의 품을 적용한다. ④ 정위치 편집작업, 도면제작 편집작업, 도면출력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측량 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에서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도화화일 1부 ㉯ 표정기록부 1부 ㉰ 성과 점검표 1부 ㉱ 수치지도 관리대장 1부 [설계예] ① 수치도화 작업 ㉮ 설계제원 ① 사 용 기 계 : 수치도화기 ② 사 진 축 척 : 1/20,000 ③ 도 화 면 적 : 100㎢ ④ 작 업 구 역 : 농경지 ⑤ 증 가 계 수 : 지 형 : 1.0	1. 수치도화 사진축척별 작업량 사진축척 / 1/3,000 / 1/5,000 / 1/10,000 / 1/20,000 / 1/37,500 시간당작업량 / **0.0018** / **0.0055** / **0.0152** / **0.0482** / **0.3287** [주] ① 수치도화라 함은 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을 수치도화기로 지형지물을 수치형식으로 측정하여 이를 컴퓨터에 수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본 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진축척에 대하여는 보간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인원편성, 지형상 증가계수, 도화작업의 종류에 따른 증감계수는 "21-23 세부도화"의 품을 적용한다. ④ 정위치 편집작업, 도면제작 편집작업, 도면출력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에서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공측량 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본 품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상각비·정비비는 별도 계상한다. ⑦ 본 품에서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⑧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도화화일 1부 ㉯ 표정기록부 1부 ㉰ 성과 점검표 1부 ㉱ 수치지도 관리대장 1부 [설계예] ① 수치도화 작업 ㉮ 설계제원 ① 사 용 기 계 : 수치도화기 ② 사 진 축 척 : 1/20,000 ③ 도 화 면 적 : 100㎢ ④ 작 업 구 역 : 농경지 ⑤ 증 가 계 수 : 지 형 : 1.0	-개정안의 인원편성 및 작업량을 기준으로한 도엽당 소요비용은 기존 비용의 91% 수준 -정부조직개편에 의한 명칭 수정

항 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24 수치 지도 작성	보완			- 인 원 편 성 변경에 따른 설계예 수정

㉯ 설 계

㉠ 인건비

구분		세부도화	비고
기술자	특급	298×0.05=14.9	{100㎢÷(0.0419×1.0)}÷8시간 =298
	고급	298×0.05=14.9	
	중급	298×0.10=29.8	
	초급	298×0.10=29.8	
기능사 (도화)	고급	298×0.05=14.9	
	중급	298×0.40=119.2	
	초급	298×0.25=74.5	
계		298	298

㉡ 기계비

구분	상각비	정비비	비고
도화기	298	298	

㉯ 설 계

㉠ 인건비

구분		수치도화	비고
기술자	특급	259×0.05=12.95	{100㎢÷(0.0482×1.0)}÷8시간 =259
	고급	259×0.10=25.9	
	중급	259×0.15=38.85	
	초급	259×0.10=25.9	
기능사 (도화)	고급	259×0.10=25.9	
	중급	259×0.30=77.7	
	초급	259×0.20=51.8	
계		259	259

㉡ 기계비

구분	상각비	정비비	비고
도화기	259	259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29-1 신규등록 측량(도해)	보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 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19)		1					(0.19)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등사		(0.12)		1					(0.12)				
준비도	작성	(0.10)			1					(0.10)			
	확인	(0.03)		1					(0.03)				
실지측량		0.73	1		1	1		0.73		0.73	0.73		
성과설명		0.08	1					0.08					
결과도작성		(0.17)		1					(0.17)				
면적측정		(0.08)			1					(0.08)			
성과도및조서작성		(0.06)			1					(0.06)			
점검		(0.10)	1					(0.10)					
성과인계		(0.08)	1					(0.08)					
소계	외업	0.81						0.81		0.73	0.73		
	내업	(1.02)						(0.27)	(0.60)	(0.24)			
합계		1.83						1.08	0.60	0.97	0.73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26조 규정의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도해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19)		1				(0.19)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9)	1	1			(0.09)	(0.09)			
등사		(0.12)		1				(0.12)			
준비도	작성	(0.10)		1				(0.10)			
	확인	(0.03)		1				(0.03)			
실지측량		0.73	1	1	1		0.73	0.73	0.73		
성과설명		0.08	1				0.08				
결과도작성		(0.17)		1				(0.17)			
면적측정		(0.08)		1				(0.08)			
성과도및조서작성		(0.06)		1				(0.06)			
점검		(0.10)	1				(0.10)				
성과인계		(0.08)	1				(0.08)				
소계	외업	0.81					0.81	0.73	0.73		
	내업	(1.02)					(0.27)	(0.84)			
합계		1.83					1.08	1.57	0.73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26조 규정의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도해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0**	**1.62**	**1.75**	**1.90**	**2.13**	**2.23**	**1.73+0.1(n)**

·계수 구체적 표현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
③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table>
<tr><th>축척지역별
구분</th><th>1/500, 1/600</th><th>1/1000, 1/1200, 1/2400</th><th>1/3000</th><th>1/6000</th></tr>
<tr><td>계수</td><td>0.00</td><td>0.23</td><td>0.35</td><td>0.37</td></tr>
</table>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산한다.
<table>
<tr><th>내 용
구 분</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0.00</td><td>0.40</td><td>0.54</td></tr>
</table>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신규등록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내용
구분</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등사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⑦ 기타사항
・신규등록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td>
<td>
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토 지</th><th>임 야</th></tr>
<tr><td>계수</td><td>1.12</td><td>1.36</td></tr>
</table>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산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1.00</td><td>1.40</td><td>1.54</td></tr>
</table>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신규등록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분
내용</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등사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⑦ 기타사항
・신규등록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td>
<td>
・축척별 개념을 지적공부등록지별 형태로 전환 →수수료체계 단순화, 국민의 이해증진(시행중)

・내용의 구체화 자구수정 및 계수 보완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 근거 명시
</td>
</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계산예]
1필지의 면적이 10,000㎡ 미등록지를 축척 1/1,200인 시지역으로 신규등록측량할 경우
① 기본품
<table>
<tr><th>구 분 \ 내 용</th><th>수 량</th><th>단가</th><th>금 액</th></tr>
<tr><td>지 적 기 사</td><td>1.12</td><td>w_1</td><td>$W_1=1.12\times w_1$</td></tr>
<tr><td>지적산업기사</td><td>0.43</td><td>w_2</td><td>$W_2=0.43\times w_2$</td></tr>
<tr><td>지적기능산업기사</td><td>1.43</td><td>w_3</td><td>$W_3=1.43\times w_3$</td></tr>
<tr><td>지 적 기 능 사</td><td>1.09</td><td>w_4</td><td>$W_4=1.09\times w_4$</td></tr>
<tr><td>계</td><td></td><td></td><td>ΣW</td></tr>
</table>
② 기준면적계수
ΣW1 = ΣW×1.20
③ 정도계수
ΣW2 = ΣW×0.05
④ 난이도계수
ΣW3 = ΣW×0.30
합계 = ΣW+ΣW1+ΣW2+ΣW3</td>
<td>[계산예]
① 기준단가
시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10,000㎡인 미등록 토지를 도해측량방법으로 신규등록 할 경우
㉠기본계수 : 1.0 ㉡등록계수 : 0.12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90
합계 : 2.42 = (㉠+㉡+㉢+㉣)
<table>
<tr><th>구 분 \ 내 용</th><th>수 량</th><th>단 가</th><th>금 액</th></tr>
<tr><td>지 적 기 사</td><td>1.08×2.42=2.61</td><td>w_1</td><td>$W_1=2.61\times w_1$</td></tr>
<tr><td>지 적 산 업 기 사</td><td>1.57×2.42=3.80</td><td>w_2</td><td>$W_2=3.80\times w_2$</td></tr>
<tr><td>지 적 기 능 사</td><td>0.73×2.42=1.77</td><td>w_3</td><td>$W_3=1.77\times w_3$</td></tr>
<tr><td>계</td><td></td><td></td><td>ΣW</td></tr>
</table>
[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② 집단지・연속지
시지역으로서 70필지의 미등록 토지를 도해측량방법으로 신규등록 할 경우 (1필지당 단가)
㉠기본계수(50필지까지) : 1.0, ㉡기본계수(100필지까지) : 0.97 ㉢등록계수 : 0.12
㉣지역구분계수 : 0.40 | 합계 : 1.52 = (㉠+㉢+㉣), 1.49 = (㉡+㉢+㉣)
㉮ 기본단가(50필지까지)
<table>
<tr><th>구 분 \ 내 용</th><th>수 량</th><th>단 가</th><th>금 액</th></tr>
<tr><td>지 적 기 사</td><td>1.08×1.52=1.64</td><td>w_1</td><td>$W_1=1.64\times w_1$</td></tr>
<tr><td>지 적 산 업 기 사</td><td>1.57×1.52=2.39</td><td>w_2</td><td>$W_2=2.39\times w_2$</td></tr>
<tr><td>지 적 기 능 사</td><td>0.73×1.52=1.11</td><td>w_3</td><td>$W_3=1.11\times w_3$</td></tr>
<tr><td>계</td><td></td><td></td><td>ΣW</td></tr>
</table>
[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td>
<td>・계산예 보완
-자격종목 통합 및 예시 구체화</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보완		㉯ 체감계수 적용단가 (51필지～100필지까지) (내용 / 구분) 수 량 / 단 가 / 금 액 지 적 기 사 — 1.08×1.49=1.61 — w_1 — $W_1=1.61\times w_1$ 지 적 산 업 기 사 — 1.57×1.49=2.34 — w_2 — $W_2=2.34\times w_2$ 지 적 기 능 사 — 0.73×1.49=1.09 — w_3 — $W_3=1.09\times w_3$ 계 — — — ΣW [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합 계] = (단가ⓐ × 50필지) + (단가ⓑ × 20필지) [주] 1.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2. 집단지・연속지인 경우 50필지까지는 기본단가를, 100필지까지는 체감계수가 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29-2 신규등록 측량 (수치)	보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38)		1					(0.38)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14)	1	1				(0.14)	(0.14)				
등사		(0.16)		1					(0.16)				
준비도	작성	(0.13)			1					(0.13)			
	확인	(0.05)		1					(0.05)				
실지측량		0.97	1		1	1		0.97		0.97	0.97		
성과설명		0.11	1					0.11					
결과도작성		(0.27)		1					(0.27)				
면적측정		(0.10)			1					(0.10)			
성과도및조서작성		(0.10)			1					(0.10)			
점검		(0.17)	1					(0.17)					
성과인계		(0.10)	1					(0.10)					
소계	외업	1.08						1.08		0.97	0.97		
	내업	(1.60)						(0.41)	(1.00)	(0.33)			
합계		2.68						1.49	1.00	1.30	0.97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26조 규정의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38)		1				(0.38)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14)	1	1			(0.14)	(0.14)			
등사		(0.16)		1				(0.16)			
준비도	작성	(0.13)		1				(0.13)			
	확인	(0.05)		1				(0.05)			
실지측량		0.97	1	1	1		0.97	0.97	0.97		
성과설명		0.11	1				0.11				
결과도작성		(0.27)		1				(0.27)			
면적측정		(0.10)		1				(0.10)			
성과도및조서작성		(0.10)		1				(0.10)			
점검		(0.17)	1				(0.17)				
성과인계		(0.10)	1				(0.10)				
소계	외업	1.08					1.08	0.97	0.97		
	내업	(1.60)					(0.41)	(1.33)			
합계		2.68					1.49	2.30	0.97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26조 규정의 토지개발사업 이외의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품이다.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table>
<tr><th>가산횟수 / 구 분</th><th>0회</th><th>1</th><th>2</th><th>3</th><th>4</th><th>5</th><th>6이상</th></tr>
<tr><td>계수</td><td>0.00</td><td>0.62</td><td>0.75</td><td>0.90</td><td>1.13</td><td>1.23</td><td>0.73+0.1(n)</td></tr>
</table>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산한다.
<table>
<tr><th>구 분 /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0.00</td><td>0.40</td><td>0.54</td></tr>
</table>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신규등록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table>
<tr><th>내용 / 구분</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등사도 1부
㉰ 좌표면적 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⑥ 기타사항
・신규등록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td>
<td>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table>
<tr><th>가산횟수 / 구 분</th><th>0회</th><th>1</th><th>2</th><th>3</th><th>4</th><th>5</th><th>6이상</th></tr>
<tr><td>계수</td><td><u>1.00</u></td><td><u>1.62</u></td><td><u>1.75</u></td><td><u>1.90</u></td><td><u>2.13</u></td><td><u>2.23</u></td><td><u>1.73+0.1(n)</u></td></tr>
</table>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산한다.
<table>
<tr><th>구 분 /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u>1.00</u></td><td><u>1.40</u></td><td><u>1.54</u></td></tr>
</table>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신규등록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table>
<tr><th>구분 / 내용</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신규등록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등사도 1부
㉰ 좌표면적 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⑥ 기타사항
・신규등록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u>・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u>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u>・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u></td>
<td>・계수 구체적 표현

・계수 구체적 표현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 근거 명시</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29-3 시가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	보완			

21-29-3 **시가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4.03)		1					(4.03)				( )는 내업임
계획준비		(3.42)	1	1				(3.42)	(3.42)				
현장조사		4.82	1	1	1			4.82	4.82	4.82			
등사		(3.58)		1					(3.58)				
지구계준비도	작성	(6.19)		1					(6.19)				
	확인	(0.92)	1					(0.92)					
가구점	측량	13.22	1	1	1	1		13.22	13.22	13.22	13.22		
	계산	(10.86)	1	1				(10.86)	(10.86)				
필계점	측량	9.18	1	1	1	1		9.18	9.18	9.18	9.18		
	계산	(9.44)	1	1				(9.44)	(9.44)				
중심점계산		(8.40)	1	1				(8.40)	(8.40)				
말박기	계산	(10.89)	1	1				(10.89)	(10.89)				
측량	측량	21.39	1	1	1	1		21.39	21.39	21.39	21.39		
좌표면적계산		(8.43)	1	1				(8.43)	(8.43)				
결과도작성		(3.10)		1	1				(3.10)	(3.10)			
성과작성		(18.22)		1	1				(18.22)	(18.22)			
조서작성		(5.88)		1	1				(5.88)	(5.88)			
점검		(5.01)	1					(5.01)					
성과인계		(2.58)	1					(2.58)					
소계	외업	48.61						48.61	48.61	48.61	43.79		
	내업	(100.95)						(59.95)	(92.44)	(27.20)			
합계		149.56						108.56	141.05	75.81	43.79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26조 규정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시가지**구획정리·공업단지 등)**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체감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2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2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다만,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용 / 구분	20만㎡ 이하	20만㎡ - 50만㎡	50만㎡ - 100만㎡	100만㎡ - 200만㎡	200만㎡ - 300만㎡	**300만㎡ 이상**
계수	1.0	0.9	0.8	0.7	0.6	0.5

21-29-3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측량(수치)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4.03)		1				(4.03)			( )는 내업임
계획준비		(3.42)	1	1			(3.42)	(3.42)			
현장조사		4.82	1	2			4.82	9.64			
등사		(3.58)		1				(3.58)			
지구계준비도	작성	(6.19)		1				(6.19)			
	확인	(0.92)	1				(0.92)				
가구점	측량	13.22	1	2	1		13.22	26.44	13.22		
	계산	(10.86)	1	1			(10.86)	(10.86)			
필계점	측량	9.18	1	2	1		9.18	18.36	9.18		
	계산	(9.44)	1	1			(9.44)	(9.44)			
중심점계산		(8.40)	1	1			(8.40)	(8.40)			
말박기	계산	(10.89)	1	1			(10.89)	(10.89)			
측량	측량	21.39	1	2	1		21.39	42.78	21.39		
좌표면적계산		(8.43)	1	1			(8.43)	(8.43)			
결과도작성		(3.10)		2				(6.20)			
성과작성		(18.22)		2				(36.44)			
조서작성		(5.88)		2				(11.76)			
점검		(5.01)	1				(5.01)				
성과인계		(2.58)	1				(2.58)				
소계	외업	48.61					48.61	97.22	43.79		
	내업	(100.95)					(59.95)	(119.64)			
합계		149.56					108.56	216.86	43.79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26조 규정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공업단지 등)**과 항만법, 신항만개발촉진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체감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2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2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다만,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 내용	20만㎡ 이하	20만㎡**초과** ~50만㎡	50만㎡**초과** ~100만㎡	100만㎡**초과** ~200만㎡	200만㎡**초과** ~300만㎡	**300만㎡ 초과**
계수	1.0	0.9	0.8	0.7	0.6	0.5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 ·관련법령의 구체적 명시
-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td>
<td>③ 필지가산계수
본 품은 1지구내의 필지수를 50필지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1지구내의 필지수가 50필지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d>필지수</td><td>50 이하</td><td>51-100</td><td>101-200</td><td>201-300</td><td>301-400</td><td>401-500</td><td>500초과시
매100필지마다</td></tr>
<tr><td>계수</td><td>0.00</td><td>0.05</td><td>0.10</td><td>0.15</td><td>0.20</td><td>0.25</td><td>0.05×n</td></tr>
</table>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측량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면적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거리계산부 각1부
ⓔ 측량결과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 측량종합도 1부
ⓗ 면적조서 3부
ⓘ 국유지 증여도 1부
ⓙ 국유지 증여지조서 1부
ⓚ 지적도 작성 1부
⑤ 기타사항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측량지구면적이 50,000㎡이하인 경우에는 50,000㎡의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말박기 측량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말박기 측량품을 제외한다.</td>
<td>③ 필지가산계수
본 품은 1지구내의 필지수를 50필지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1지구내의 필지수가 50필지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d>필지수</td><td>50이하</td><td>51~100</td><td>101~200</td><td>201~300</td><td>301~400</td><td>401~500</td><td>500초과시
매100필지마다</td></tr>
<tr><td>계수</td><td>1.00</td><td>1.05</td><td>1.10</td><td>1.15</td><td>1.20</td><td>1.25</td><td>1.05×n</td></tr>
</table>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측량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면적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거리계산부 각1부
ⓔ 측량결과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 측량종합도 1부
ⓗ 면적조서 3부
ⓘ 국유지 증여도 1부
ⓙ 국유지 증여지조서 1부
ⓚ 지적도 작성 1부
⑤ 기타사항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측량지구면적이 50,000㎡이하인 경우에는 50,000㎡의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u>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u>
·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말박기 측량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말박기 측량품을 제외한다.
· <u>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u></td>
<td>· 내용의 구체화 자구수정 및 계수 보완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 근거 명시</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29-4 경지구획정리 신규 등록 측량(수치)	보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작업별 \ 구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3.40)		1	1				(3.40)	(3.40)			( )는 내업임
계획준비		(2.63)	1	1				(2.63)	(2.63)				
현장조사		3.90	1	1				3.90	3.90				
등사		(6.00)		1	1				(6.00)	(6.00)			
지구계준비도	작성	(7.83)	1	1	1	1		(7.83)	(7.83)	(7.83)	(7.83)		
	확인	(1.05)	1					(1.05)					
필계점	측량	21.73	1	1	1	1		21.73	21.73	21.73	21.73		
	계산	(16.70)	1	1				(16.70)	(16.70)				
좌표면적계산		(15.75)	1	1				(15.75)	(15.75)				
결과도 작성		(3.03)	1	1	1	1		(3.03)	(3.03)	(3.03)	(3.03)		
성과작성		(18.13)	1	1	1	1		(18.13)	(18.13)	(18.13)	(18.13)		
조서작성		(5.88)		1	1	1			(5.88)	(5.88)	(5.88)		
점검		(5.65)	1					(5.65)					
성과인계		(1.40)	1					(1.40)					
소계	외업	25.63						25.63	25.63	21.73	21.73		
	내업	(87.45)						(64.34)	(79.35)	(44.27)	(34.87)		
합계		113.08						89.97	104.95	66.00	56.60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26조 규정의 농어촌정비사업 등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체감계수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다만,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 내용	100만㎡ 이하	100만㎡ -300만㎡	300만㎡ -500만㎡	500만㎡ -800만㎡	800만㎡ -1000만㎡	1000만㎡ 이상
계 수	1.0	0.9	0.8	0.7	0.6	0.5

개 정

작업별 \ 구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3.40)		2				(6.80)			( )는 내업임
계획준비		(2.63)	1	1			(2.63)	(2.63)			
현장조사		3.90	1	1			3.90	3.90			
등사		(6.00)		2				(12.00)			
지구계준비도	작성	(7.83)	1	2	1		(7.83)	(15.66)	(7.83)		
	확인	(1.05)	1				(1.05)				
필계점	측량	21.73	1	2	1		21.73	43.46	21.73		
	계산	(16.70)	1	1			(16.70)	(16.70)			
좌표면적계산		(15.75)	1	1			(15.75)	(15.75)			
결과도 작성		(3.03)	1	2	1		(3.03)	(6.06)	(3.03)		
성과작성		(18.13)	1	2	1		(18.13)	(36.26)	(18.13)		
조서작성		(5.88)		2	1			(11.76)	(5.88)		
점검		(5.65)	1				(5.65)				
성과인계		(1.40)	1				(1.40)				
소계	외업	25.63					25.63	47.36	21.73		
	내업	(87.45)					(72.17)	(123.62)	(34.87)		
합계		113.08					97.80	170.98	56.60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26조 규정의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체감계수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다만,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용 \ 구분	100만㎡ 이하	100만㎡초과 ~300만㎡	300만㎡초과 ~500만㎡	500만㎡초과 ~800만㎡	800만㎡초과 ~1000만㎡	1000만㎡ 초과
계 수	1.0	0.9	0.8	0.7	0.6	0.5

·합계 오류사항 수정

·관련법령 등의 근거구체적 명시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필계점 측량부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측량결과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 측량종합도 1부 ㉳ 면적조서 1부 ㉴ 국유지 증여도 1부 ㉵ 국유지 증여지조서 1부 ㉶ 지적도 작성 1부 ④ 기타사항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측량지구면적이 100,000㎡이하인 경우에는 100,000㎡의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필계점 측량부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측량결과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 측량종합도 1부 ㉳ 면적조서 1부 ㉴ 국유지 증여도 1부 ㉵ 국유지 증여지조서 1부 ㉶ 지적도 작성 1부 ④ 기타사항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측량지구면적이 100,000㎡이하인 경우에는 100,000㎡의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광파기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는 지적기준점측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적기준점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적기준점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 근거 명시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30-1 등록전환 측량(도해)	보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 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합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비고
자료조사		(0.26)		1					(0.26)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6)	1	1				(0.06)	(0.06)				
등사		(0.11)		1					(0.11)				
준비도	작성	(0.12)			1					(0.12)			
	확인	(0.08)		1					(0.08)				
신도축도		(0.09)		1					(0.09)				
실지측량		0.50	1		1	1		0.50		0.50	0.50		
성과설명		0.05	1					0.05					
결과도작성		(0.15)		1					(0.15)				
면적측정		(0.06)			1					(0.06)			
성과도및조서작성		(0.06)			1					(0.06)			
점검		(0.08)	1					(0.08)					
성과인계		(0.05)	1					(0.05)					
소계	외업	0.55						0.55		0.50	0.50		
	내업	(1.12)						(0.19)	(0.75)	(0.24)			
합계		1.67						0.74	0.75	0.74	0.50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합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비고
자료조사		(0.26)		1				(0.26)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6)	1	1			(0.06)	(0.06)			
등사		(0.11)		1				(0.11)			
준비도	작성	(0.12)		1				(0.12)			
	확인	(0.08)		1				(0.08)			
신도축도		(0.09)		1				(0.09)			
실지측량		0.50	1	1	1		0.50	0.50	0.50		
성과설명		0.05	1				0.05				
결과도작성		(0.15)		1				(0.15)			
면적측정		(0.06)		1				(0.06)			
성과도및조서작성		(0.06)		1				(0.06)			
점검		(0.08)	1				(0.08)				
성과인계		(0.05)	1				(0.05)				
소계	외업	0.55					0.55	0.50	0.50		
	내업	(1.12)					(0.19)	(0.99)			
합계		1.67					0.74	1.49	0.50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0**	**1.62**	**1.75**	**1.90**	**2.13**	**2.23**	**1.73+0.1(n)**

·계수 구체적 표현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③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축척별
구 분</th><th>1/500, 1/600</th><th>1/1000, 1/1200, /2400</th></tr>
<tr><td>계수</td><td>0.00</td><td>0.23</td></tr>
</table>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0.00</td><td>0.40</td><td>0.54</td></tr>
</table>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등록전환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내용
구분</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등사도 1부
㉰ 임야도 등사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⑦ 기타사항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td>
<td>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토 지</th><th>임 야</th></tr>
<tr><td>계수</td><td>1.12</td><td>1.36</td></tr>
</table>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1.00</td><td>1.40</td><td>1.54</td></tr>
</table>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등록전환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분
내용</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등사도 1부
㉰ 임야도 등사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⑦ 기타사항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한다.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td>
<td>・축척별 개념을 지적공부등록지별 형태로 전환 →수수료체계 단순화, 국민의 이해증진(시행중)

・계수 구체적 표현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 근거 명시</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보완			·계산예 보완 -자격종목 통합 및 예시 구체화

[계산예]

시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5,000㎡인 임야를 1/1,200로 등록전환 할 경우

① 기본품

구분 \ 내용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1.37	w_1	$W_1=1.37\times w_1$
지적산업기사	0.67	w_2	$W_2=0.67\times w_2$
지적기능산업기사	1.71	w_3	$W_3=1.71\times w_3$
지 적 기 능 사	1.33	w_4	$W_4=1.33\times w_4$
계			ΣW

② 기준면적계수

ΣW1 = ΣW×0.50

③ 정도계수

ΣW2 = ΣW×0.05

④ 난이도계수

ΣW3 = ΣW×0.30

합계 = ΣW+ΣW1+ΣW2+ΣW3

[계산예]

① 기준단가

시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5,000㎡인 임야를 토지로 도해측량방법으로 등록전환 할 경우

㉠기본계수 : 1.0 ㉡등록계수 : 0.12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62
합계 : 2.14 = (㉠+㉡+㉢+㉣)

구분 \ 내용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0.74×2.14=1.58	w_1	$W_1=1.58\times w_1$
지 적 산 업 기 사	1.49×2.14=3.19	w_2	$W_2=3.19\times w_2$
지 적 기 능 사	0.50×2.14=1.07	w_3	$W_3=1.07\times w_3$
계			ΣW

[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② 집단지 · 연속지

시지역으로서 70필지의 임야를 토지로 도해측량방법으로 등록전환 할 경우 (1필지당 단가)

㉠기본계수(50필지까지) : 1.0, ㉡기본계수(100필지까지) : 0.97 ㉢등록계수 : 0.12
㉣지역구분계수 : 0.40 | 합계 : 1.52 = (㉠+㉢+㉣), 1.49 = (㉡+㉢+㉣)

㉮ 기본단가(50필지까지)

구분 \ 내용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0.74×1.52=1.12	w_1	$W_1=1.12\times w_1$
지 적 산 업 기 사	1.49×1.52=2.26	w_2	$W_2=2.26\times w_2$
지 적 기 능 사	0.50×1.52=0.76	w_3	$W_3=0.76\times w_3$
계			ΣW

[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보완		㉯ 체감계수 적용단가 (51필지～100필지까지) (내용 / 구분) 수 량 / 단 가 / 금 액 지 적 기 사 0.74×1.49=1.10 w_1 $W_1=1.10\times w_1$ 지 적 산 업 기 사 1.49×1.49=2.22 w_2 $W_2=2.22\times w_2$ 지 적 기 능 사 0.50×1.49=0.75 w_3 $W_3=0.75\times w_3$ 계 ΣW [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합 계] = (단가ⓐ × 50필지) + (단가ⓑ × 20필지) [주] 1.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2. 집단지・연속지인 경우 50필지까지는 기본단가를, 100필지까지는 체감계수가 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30-2 등록전환 측량(수치)	보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27)		1					(0.27)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6)	1	1				(0.06)	(0.06)				
등사		(0.22)		1					(0.22)				
준비도	작성	(0.14)			1					(0.14)			
	확인	(0.06)		1					(0.06)				
실지측량		0.46	1		1	1		0.46		0.46	0.46		
성과설명		0.06	1					0.06					
결과도작성		(0.21)		1					(0.21)				
면적측정		(0.06)			1					(0.06)			
성과도및조서작성		(0.10)			1					(0.10)			
점검		(0.10)	1					(0.10)					
성과인계		(0.05)	1					(0.05)					
소계	외업	0.52						0.52		0.46	0.46		
	내업	(1.27)						(0.21)	(0.82)	(0.30)			
합계		1.79						0.73	0.82	0.76	0.46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27)		1				(0.27)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6)	1	1			(0.06)	(0.06)			
등사		(0.22)		1				(0.22)			
준비도	작성	(0.14)		1				(0.14)			
	확인	(0.06)		1				(0.06)			
실지측량		0.46	1	1	1		0.46	0.46	0.46		
성과설명		0.06	1				0.06				
결과도작성		(0.21)		1				(0.21)			
면적측정		(0.06)		1				(0.06)			
성과도및조서작성		(0.10)		1				(0.10)			
점검		(0.10)	1				(0.10)				
성과인계		(0.05)	1				(0.05)				
소계	외업	0.52					0.52	0.46	0.46		
	내업	(1.27)					(0.21)	(1.12)			
합계		1.79					0.73	1.58	0.46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수치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3,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0**	**1.62**	**1.75**	**1.90**	**2.13**	**2.23**	**1.73+0.1(n)**

·계수 구체적 표현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0.00</td><td>0.40</td><td>0.54</td></tr>
</table>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등록전환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내용
구분</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등사도 1부
㉰ 임야도 등사도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⑥ 기타사항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td>
<td>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u>1.00</u></td><td><u>1.40</u></td><td><u>1.54</u></td></tr>
</table>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등록전환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분
내용</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록전환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등사도 1부
㉰ 임야도 등사도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⑥ 기타사항
・등록전환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u>・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u>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u>・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u></td>
<td>・계수 구체적 표현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 근거 명시</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31-1 분할측량(도해)	보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 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 료 조 사		(0.20)		1					(0.20)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4)	1	1				(0.04)	(0.04)				
등 사		(0.10)		1					(0.10)				
준 비 도	작 성	(0.10)			1					(0.10)			
	확 인	(0.06)		1					(0.06)				
실 지 측 량		0.64	1		1	1		0.64		0.64	0.64		
성 과 설 명		0.04	1					0.04					
결 과 도 작 성		(0.10)		1					(0.10)				
면 적 측 정		(0.04)			1					(0.04)			
성과도및조서작성		(0.04)			1					(0.04)			
점 검		(0.06)	1					(0.06)					
성 과 인 계		(0.04)	1					(0.04)					
소계	외업	0.68						0.68		0.64	0.64		
	내업	(0.78)						(0.14)	(0.50)	(0.18)			
합 계		1.46						0.82	0.50	0.82	0.64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해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 료 조 사		(0.20)		1				(0.20)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4)	1	1			(0.04)	(0.04)			
등 사		(0.10)						(0.10)			
준 비 도	작 성	(0.10)		1				(0.10)			
	확 인	(0.06)		1				(0.06)			
실 지 측 량		0.64	1	1	1		0.64	0.64	0.64		
성 과 설 명		0.04	1				0.04				
결 과 도 작 성		(0.10)		1				(0.10)			
면 적 측 정		(0.04)		1				(0.04)			
성과도및조서작성		(0.04)		1				(0.04)			
점 검		(0.06)	1				(0.06)				
성 과 인 계		(0.04)	1				(0.04)				
소계	외업	0.68					0.68	0.64	0.64		
	내업	(0.78)					(0.14)	(0.68)			
합 계		1.46					0.82	1.32	0.64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해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0**	**1.62**	**1.75**	**1.90**	**2.13**	**2.23**	**1.73+0.1(n)**

·계수 구체적 표현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③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축척별
구분</th><th>1/600</th><th>1/1000, 1/1200, 1/2400</th><th>1/3000</th><th>1/6000</th></tr>
<tr><td>계수</td><td>0.00</td><td>0.23</td><td>0.35</td><td>0.37</td></tr>
</table>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0.00</td><td>0.40</td><td>0.54</td></tr>
</table>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분할후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내용
구분</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td>
<td>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토 지</th><th>임 야</th></tr>
<tr><td>계수</td><td>1.12</td><td>1.36</td></tr>
</table>
④ 지역구분계수(기관 등이 신청하는 특수업무에 적용)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1.00</td><td>1.40</td><td>1.54</td></tr>
</table>
* 특수업무란 국가・공공기관 및 법인 등이 측량을 신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⑤ 지가계수(개인이 신청하는 일반업무에 적용)
㉮ 개인이 신청하는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다음의 공시지가 가격대별 계수를 본 품에 곱하여 계상한다. 대상 토지에 대한 적용 공시지가는 당해 연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지가자료를 이용하고, 시점은 지적측량의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자료가 없을 경우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table>
<tr><th>공시지가
내용</th><th>3,000원 이하</th><th>3,001원 ~10,000원</th><th>10,001원 ~30,000원</th><th>30,001원 ~100,000원</th><th>100,001원 ~1,000,000원</th><th>1,000,000원 초과</th></tr>
<tr><td>계수</td><td>0.70</td><td>0.85</td><td>1.00</td><td>1.30</td><td>1.50</td><td>1.60</td></tr>
</table>
* 일반업무란 개인이 본인소유의 재산관리 등의 목적으로 측량을 신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⑥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분할후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분
내용</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td>
<td>・축척별 개념을 지적공부등록지별 형태로 전환 →수수료체계 단순화, 국민의 이해증진(시행중)
・지역구분계수 적용기준 구체화 (특수업무)
・계수구체화

・토지의 공시지가 계수 적용기준 도입 (일반업무)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보완	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분할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⑦ 기타사항 ·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경계선이나 면적지정 등으로 추가로 현장측량 할 때마다 기본품에 의한 측량비의 50%의 값을 가산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⑦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분할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⑧ 기타사항 ·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면적이나 분할선을 도면상에 지정하여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50%의 값을 가산한다. 이 경우 추가로 현장측량 할 때 마다 가산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 근거 명시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보완			·계산예 보완 -자격종목 통합 및 예시 구체화

[계산예]

시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5,000㎡인 임야를 1/1,200로 등록전환 할 경우

① 기본품

구분 \ 내용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1.37	w_1	$W_1=1.37\times w_1$
지적산업기사	0.67	w_2	$W_2=0.67\times w_2$
지적기능산업기사	1.71	w_3	$W_3=1.71\times w_3$
지 적 기 능 사	1.33	w_4	$W_4=1.33\times w_4$
계			∑W

② 기준면적계수

∑W1 = ∑W×0.50

③ 정도계수

∑W2 = ∑W×0.05

④ 난이도계수

∑W3 = ∑W×0.30

합계 = ∑W+∑W1+∑W2+∑W3

[계산예]

① 기준단가

시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분할측량 할 경우

㉠기본계수 : 1.0 ㉡등록계수 : 0.12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75
합계 : 2.27 = (㉠+㉡+㉢+㉣)

구분 \ 내용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0.82×2.27=1.86	w_1	$W_1=1.86\times w_1$
지 적 산 업 기 사	1.32×2.27=3.00	w_2	$W_2=3.00\times w_2$
지 적 기 능 사	0.64×2.27=1.45	w_3	$W_3=1.45\times w_3$
계			∑W

[결정단가] = (∑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2

② 집단지 · 연속지

시지역으로서 70필지의 토지를 분할측량 할 경우 (1필지당 단가)

㉠기본계수(50필지까지) : 1.0, ㉡기본계수(100필지까지) : 0.97 ㉢등록계수 : 0.12
㉣지역구분계수 : 0.40 | 합계 : 1.52 = (㉠+㉢+㉣), 1.49 = (㉡+㉢+㉣)

㉮ 기본단가(50필지까지)

구분 \ 내용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0.82×1.52=1.25	w_1	$W_1=1.25\times w_1$
지 적 산 업 기 사	1.32×1.52=2.01	w_2	$W_2=2.01\times w_2$
지 적 기 능 사	0.64×1.52=0.97	w_3	$W_3=0.97\times w_3$
계			∑W

[결정단가ⓐ] = (∑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2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보완		㉯ 체감계수 적용단가 (51필지～100필지까지)	

구분 \ 내용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0.82×1.49=1.22	w_1	$W_1=1.22\times w_1$
지 적 산 업 기 사	1.32×1.49=1.97	w_2	$W_2=1.97\times w_2$
지 적 기 능 사	0.64×1.49=0.95	w_3	$W_3=0.95\times w_3$
계			ΣW

[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2

[합 계] = (단가ⓐ × 50필지) + (단가ⓑ × 20필지)

㉰ 지가계수 적용단가

일반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의 경우 ㎡당 공시지가 2,500원, 축척 1:1,200 토지 1필지의 면적이 7,000㎡이고 2필지로 분할측량 할 경우

㉠기본계수 : 1.0 ㉡등록계수 : 0.12 ㉢면적계수 : 0.75
㉣지가계수 : -0.30 | 합계 : 1.57 = ㉠+㉡+㉢+㉣

구분 \ 내용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0.82×1.57=1.29	w_1	$W_1=1.29\times w_1$
지 적 산 업 기 사	1.32×1.57=2.07	w_2	$W_2=2.07\times w_2$
지 적 기 능 사	0.64×1.57=1.00	w_3	$W_3=1.00\times w_3$
계			ΣW

[결정단가]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2

[주] 1.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2. 집단지・연속지인 경우 50필지까지는 기본단가를, 100필지까지는 체감계수가 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31-2 분할측량(수치)	보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22)		1					(0.22)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6)	1	1				(0.06)	(0.06)				
등사		(0.08)		1					(0.08)				
준비도	작성	(0.10)			1					(0.10)			
	확인	(0.06)		1					(0.06)				
실지측량		0.74	1		1	1		0.74		0.74	0.74		
성과설명		0.04	1					0.04					
결과도작성		(0.16)		1					(0.16)				
면적측정		(0.06)			1					(0.06)			
성과도및조서작성		(0.06)			1					(0.06)			
점검		(0.08)	1					(0.08)					
성과인계		(0.04)	1					(0.04)					
소계	외업	0.78						0.78		0.74	0.74		
	내업	(0.92)						(0.18)	(0.58)	(0.22)			
합계		1.70						0.96	0.58	0.96	0.74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수치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22)		1				(0.22)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6)	1	1			(0.06)	(0.06)			
등사		(0.08)		1				(0.08)			
준비도	작성	(0.10)		1				(0.10)			
	확인	(0.06)		1				(0.06)			
실지측량		0.74	1	1	1		0.74	0.74	0.74		
성과설명		0.04	1				0.04				
결과도작성		(0.16)		1				(0.16)			
면적측정		(0.06)		1				(0.06)			
성과도및조서작성		(0.06)		1				(0.06)			
점검		(0.08)	1				(0.08)				
성과인계		(0.04)	1				(0.04)				
소계	외업	0.78					0.78	0.74	0.74		
	내업	(0.92)					(0.18)	(0.80)			
합계		1.70					0.96	1.54	0.74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수치지역의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0**	**1.62**	**1.75**	**1.90**	**2.13**	**2.23**	**1.73+0.1(n)**

·계수 구체적 표현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0.00</td><td>0.40</td><td>0.54</td></tr>
</table>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분할후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내용
구분</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분할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td>
<td>③ 지역구분계수(기관 등이 신청하는 특수업무에 적용)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1.00</td><td>1.40</td><td>1.54</td></tr>
</table>
* 특수업무란 국가·공공기관 및 법인 등이 측량을 신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지가계수(개인이 신청하는 일반업무에 적용)
㉮ 개인이 신청하는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다음의 공시지가 가격대별 계수를 본 품에 곱하여 계상한다. 대상 토지에 대한 적용 공시지가는 당해 연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지가자료를 이용하고, 시점은 지적측량의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자료가 없을 경우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table>
<tr><th>공시지가
내용</th><th>3,000원
이하</th><th>3,001원
~10,000원</th><th>10,001원
~30,000원</th><th>30,001원
~100,000원</th><th>100,001원
~1,000,000원</th><th>1,000,000원
초과</th></tr>
<tr><td>계수</td><td>0.70</td><td>0.85</td><td>1.00</td><td>1.30</td><td>1.50</td><td>1.60</td></tr>
</table>
* 일반업무란 개인이 본인소유의 재산관리 등의 목적으로 측량을 신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분할후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분
내용</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분할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이동지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td>
<td>· 지역구분계수 적용기준 구체화 (특수업무)

· 계수 구체화

· 토지의 공시지가 계수 적용기준 도입 (일반업무)

· 내용의 구체화 자구수정</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보완	⑥ 기타사항 ·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경계선이나 면적지정 등으로 추가로 현장측량 할 때마다 기본품에 의한 측량비의 50%의 값을 가산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축척이 1/1,200인 시지역의 1필지 면적이 7,000㎡를 2필지로 분할 측량할 경우 ① 기본품 (구분 / 내용: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계) 수량: 1.11, 0.36, 1.49, 1.08 단가: w_1, w_2, w_3, w_4 금액: $W_1=1.11\times w_1$, $W_2=0.36\times w_2$, $W_3=1.49\times w_3$, $W_4=1.08\times w_4$, ∑W ② 기준면적계수 ∑W1 = ∑W×0.50 ③ 정도계수 ∑W2 = ∑W×0.05 ④ 난이도계수 ∑W3 = ∑W×0.30 합계 = ∑W+∑W1+∑W2+∑W3	⑦ 기타사항 · 분할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면적이나 분할선을 도면상에 지정하여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50%의 값을 가산한다. 이 경우 추가로 현장측량 할 때 마다 가산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시지역의 1필지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분할측량할 경우 ㉠기본계수 : 1.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75 합계 : 2.15 = (㉠+㉡+㉢) (구분 / 내용: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계) 수량: 0.96×2.15=2.06, 1.54×2.15=3.31, 0.74×2.15=1.59 단가: w_1, w_2, w_3 금액: $W_1=2.06\times w_1$, $W_2=3.31\times w_2$, $W_3=1.59\times w_3$, ∑W [결정단가] = (∑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2	·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 근거 명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 계산예시수정 →계수착오 적용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td>
<td>
② 집단지 · 연속지
수치지역인 시지역의 70필지를 토지 분할측량 할 경우 (1필지당 단가)
㉠기본계수(50필지까지) : 1.0, ㉡기본계수(100필지까지) : 0.97
㉢지역구분계수 : 0.40 | 합계 : 1.40 = (㉠+㉢), 1.37 = (㉡+㉢)
㉮ 기본단가(50필지까지)
<table>
<tr><th>구 분 \ 내 용</th><th>수 량</th><th>단 가</th><th>금 액</th></tr>
<tr><td>지 적 기 사</td><td>0.96×1.40=1.34</td><td>w_1</td><td>W_1=1.34×w_1</td></tr>
<tr><td>지 적 산 업 기 사</td><td>1.54×1.40=2.16</td><td>w_2</td><td>W_2=2.16×w_2</td></tr>
<tr><td>지 적 기 능 사</td><td>0.74×1.40=1.04</td><td>w_3</td><td>W_3=1.04×w_3</td></tr>
<tr><td>계</td><td></td><td></td><td>ΣW</td></tr>
</table>
[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2
㉯ 체감계수 적용단가 (51필지～100필지까지)
<table>
<tr><th>구 분 \ 내 용</th><th>수 량</th><th>단 가</th><th>금 액</th></tr>
<tr><td>지 적 기 사</td><td>0.96×1.37=1.32</td><td>w_1</td><td>W_1=1.32×w_1</td></tr>
<tr><td>지 적 산 업 기 사</td><td>1.54×1.37=2.11</td><td>w_2</td><td>W_2=2.11×w_2</td></tr>
<tr><td>지 적 기 능 사</td><td>0.74×1.37=1.01</td><td>w_3</td><td>W_3=1.01×w_3</td></tr>
<tr><td>계</td><td></td><td></td><td>ΣW</td></tr>
</table>
[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2
[합 계] = (단가ⓐ × 50필지) + (단가ⓑ × 20필지)
</td>
<td>· 계산예 보완
-자격종목 통합 및 예시 구체화</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보완		㉰ 지가계수 적용단가 일반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의 경우 수치지역으로 ㎡당 공시지가 2,500원, 토지 1필지의 면적이 7,000㎡이고 2필지로 분할측량 할 경우 ㉠기본계수 : 1.0 ㉡면적계수 : 0.75 ㉢지가계수 : -0.30 합계 : 1.45 = ㉠+㉡+㉢ (내용 / 구분) 지 적 기 사 — 0.96×1.45=1.39 — w_1 — $W_1=1.39\times w_1$ 지 적 산 업 기 사 — 1.54×1.45=2.23 — w_2 — $W_2=2.23\times w_2$ 지 적 기 능 사 — 0.74×1.45=1.07 — w_3 — $W_3=1.07\times w_3$ 계 — — — ΣW [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2 [주] 1.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2. 집단지・연속지인 경우 50필지까지는 기본단가를, 100필지까지는 체감계수가 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32-1 경계복원(도해)	보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합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비고
자료조사		(0.24)		1					(0.24)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6)	1	1				(0.06)	(0.06)				
등사		(0.11)		1					(0.11)				
준비도	작성	(0.10)			1					(0.10)			
	확인	(0.08)		1					(0.08)				
실지측량		0.53	1		1	1		0.53		0.53	0.53		
성과설명		0.06	1					0.06					
결과도작성		(0.09)		1					(0.09)				
성과도및조서작성		(0.05)			1					(0.05)			
점검		(0.04)	1					(0.04)					
성과인계		(0.06)	1					(0.06)					
소계	외업	0.59						0.59		0.53	0.53		
	내업	(0.83)						(0.16)	(0.58)	(0.15)			
합계		1.42						0.75	0.58	0.68	0.53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의 필지를 지적법 제32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법 제2조제9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합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비고
자료조사		(0.24)		1				(0.24)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6)	1	1			(0.06)	(0.06)			
등사		(0.11)		1				(0.11)			
준비도	작성	(0.10)		1				(0.10)			
	확인	(0.08)		1				(0.08)			
실지측량		0.53	1	1	1		0.53	0.53	0.53		
성과설명		0.06	1				0.06				
결과도작성		(0.09)		1				(0.09)			
성과도및조서작성		(0.05)		1				(0.05)			
점검		(0.04)	1				(0.04)				
성과인계		(0.06)	1				(0.06)				
소계	외업	0.59					0.59	0.53	0.53		
	내업	(0.83)					(0.16)	(0.73)			
합계		1.42					0.75	1.26	0.53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의 필지를 지적법 제32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법 제2조제9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0**	**1.62**	**1.75**	**1.90**	**2.13**	**2.23**	**1.73+0.1(n)**

·계수 구체적 표현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③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축척별
구분</th><th>1/600</th><th>1/1000, 1/1200, 1/2400</th><th>1/3000</th><th>1/6000</th></tr>
<tr><td>계수</td><td>0.00</td><td>0.23</td><td>0.35</td><td>0.37</td></tr>
</table>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0.00</td><td>0.40</td><td>0.54</td></tr>
</table>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경계복원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내용
구분</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td>
<td>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토 지</th><th>임 야</th></tr>
<tr><td>계수</td><td>1.12</td><td>1.36</td></tr>
</table>
④ 지역구분계수(기관 등이 신청하는 특수업무에 적용)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1.00</td><td>1.40</td><td>1.54</td></tr>
</table>
* 특수업무란 국가・공공기관 및 법인 등이 측량을 신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⑤ 지가계수(개인이 신청하는 일반업무에 적용)
㉮ 개인이 신청하는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다음의 공시지가 가격대별 계수를 본 품에 곱하여 계상한다. 대상 토지에 대한 적용 공시지가는 당해 연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지가자료를 이용하고, 시점은 지적측량의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자료가 없을 경우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table>
<tr><th>공시지가
내용</th><th>3,000원
이하</th><th>3,001원
~10,000원</th><th>10,001원
~30,000원</th><th>30,001원
~100,000원</th><th>100,001원
~1,000,000원</th><th>1,000,000원
초과</th></tr>
<tr><td>계수</td><td>0.70</td><td>0.85</td><td>1.00</td><td>1.30</td><td>1.50</td><td>1.60</td></tr>
</table>
* 일반업무란 개인이 본인소유의 재산관리 등의 목적으로 측량을 신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⑥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경계복원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분
내용</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td>
<td>・축척별 개념을 지적공부등록지 형태로 전환 →수수료체계 단순화, 국민의 이해증진(시행중)
・지역구분계수 적용기준 구체화 (특수업무)
・계수 구체화

・토지의 공시지가 계수 적용기준 도입 (일반업무)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td>
</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⑥ 측점계수
본 품은 5점의 경계점을 복원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복원한 경계점의 수가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내용
구분</th><th>5점이하</th><th>6점-10점</th><th>11점-15점</th><th>16점-20점</th><th>21점-25점</th><th>26점-30점</th><th>30점초과시 매5점마다</th></tr>
<tr><td>계수</td><td>0.00</td><td>0.05</td><td>0.10</td><td>0.15</td><td>0.20</td><td>0.25</td><td>0.05×n</td></tr>
</table>
⑦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⑧ 기타사항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td>
<td>⑦ 측점계수
본 품은 5점의 경계점을 복원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복원한 경계점의 수가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분
내용</th><th>5점이하</th><th>6점~10점</th><th>11점~15점</th><th>16점~20점</th><th>21점~25점</th><th>26점~30점</th><th>30점초과시 매5점마다</th></tr>
<tr><td>계수</td><td>1.00</td><td>1.05</td><td>1.10</td><td>1.15</td><td>1.20</td><td>1.25</td><td>1.05×n</td></tr>
</table>
⑧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⑨ 기타사항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u>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u>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u>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u>
· <u>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u></td>
<td>·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 근거 명시

· 법원감정업무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 요청 시 수수료 가산 근거 마련</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보완	[계산예] 축척이 1/600인 구지역의 1필지 면적이 1,500㎡인 경우 ① 기본품	[계산예] ① 기준단가 시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 ㉠기본계수 : 1.0 ㉡등록계수 : 0.12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75 합계 : 2.27 = (㉠+㉡+㉢+㉣)	· 계산예 보완 -자격종목 통합 및 예시 구체화

구분 \ 내용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0.54	w_1	$W_1=0.54\times w_1$
지 적 산 업 기 사	0.19	w_2	$W_2=0.19\times w_2$
지적기능산업기사	0.58	w_3	$W_3=0.58\times w_3$
지 적 기 능 사	0.51	w_4	$W_4=0.51\times w_4$
계			∑W

② 기준면적계수

∑W1 = ∑W×0.9

③ 정도계수

④ 난이도계수

∑W3 = ∑W×0.44

합계 = ∑W+∑W1+∑W3

구분 \ 내용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0.75×2.27=1.70	w_1	$W_1=1.70\times w_1$
지 적 산 업 기 사	1.26×2.27=2.86	w_2	$W_2=2.86\times w_2$
지 적 기 능 사	0.53×2.27=1.20	w_3	$W_3=1.20\times w_3$
계			∑W

[결정단가] = ∑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② 지가계수 적용단가

일반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의 경우 ㎡당 공시지가 2,500원, 축척 1:1,1200 토지 1필지 1,000㎡의 토지를 복원점 6점으로 복원하는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기본계수 : 1.0 ㉡등록계수 : 0.12 ㉢면적계수 : 0.62 ㉣측점계수 : 0.05
㉤지가계수 : -0.30 | 합계 : 1.49 = ㉠+㉡+㉢+㉣+㉤

구분 \ 내용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0.75×1.49=1.12	w_1	$W_1=1.12\times w_1$
지 적 산 업 기 사	1.26×1.49=1.88	w_2	$W_2=1.88\times w_2$
지 적 기 능 사	0.53×1.49=0.79	w_3	$W_3=0.79\times w_3$
계			∑W

[결정단가] =∑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주]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 · 기계경비 · 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 · 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32-2 경계복원 측량(수치)	보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합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비고
자료조사		(0.25)		1					(0.25)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6)	1					(0.06)					
등사		(0.07)		1					(0.07)				
준비도	작성	(0.10)			1					(0.10)			
	확인	(0.06)		1					(0.06)				
실지측량		0.78	1		1	1		0.78		0.78	0.78		
성과설명		0.06	1					0.06					
결과도작성		(0.14)		1					(0.14)				
성과도및조서작성		(0.05)			1					(0.05)			
점검		(0.06)	1					(0.06)					
성과인계		(0.06)	1					(0.06)					
소계	외업	0.84						0.84		0.78	0.78		
	내업	(0.85)						(0.18)	(0.58)	(0.15)			
합계		1.69						1.02	0.58	0.93	0.78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의 필지를 지적법 제32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법 제2조제9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합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비고
자료조사		(0.25)		1				(0.25)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6)	1				(0.06)				
등사		(0.07)		1				(0.07)			
준비도	작성	(0.10)		1				(0.10)			
	확인	(0.06)		1				(0.06)			
실지측량		0.78	1	1	1		0.78	0.78	0.78		
성과설명		0.06	1				0.06				
결과도작성		(0.14)		1				(0.14)			
성과도및조서작성		(0.05)		1				(0.05)			
점검		(0.06)	1				(0.06)				
성과인계		(0.06)	1				(0.06)				
소계	외업	0.84					0.84	0.78	0.78		
	내업	(0.85)					(0.18)	(0.73)			
합계		1.69					1.02	1.51	0.78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의 필지를 지적법 제32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법 제2조제9호에서 말하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0**	**1.62**	**1.75**	**1.90**	**2.13**	**2.23**	**1.73+0.1(n)**

·계수 구체적 표현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보완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내용: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계수: 0.00 / 0.40 / 0.54)	③ 지역구분계수(기관 등이 신청하는 특수업무에 적용)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내용: 군지역 / 시지역 / 구지역; 계수: 1.00 / 1.40 / 1.54) * 특수업무란 국가·공공기관 및 법인 등이 측량을 신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지가계수(개인이 신청하는 일반업무에 적용) ㉮ 개인이 신청하는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다음의 공시지가 가격대별 계수를 본 품에 곱하여 계상한다. 대상 토지에 대한 적용 공시지가는 당해 연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지가자료를 이용하고, 시점은 지적측량의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자료가 없을 경우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내용: 3,000원 이하 / 3,001원~10,000원 / 10,001원~30,000원 / 30,001원~100,000원 / 100,001원~1,000,000원 / 1,000,000원 초과; 계수: 0.70 / 0.85 / 1.00 / 1.30 / 1.50 / 1.60) * 일반업무란 개인이 본인소유의 재산관리 등의 목적으로 측량을 신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지역구분계수 적용기준 구체화 (특수업무) ·계수 구체화 ·토지의 공시지가 계수 적용기준 도입 (일반업무)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경계복원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내용: 50필지이하 / 51-100필지 / 101-500필지 / 501-1000필지 / 1000필지초과; 계수: 1.00 / 0.97 / 0.91 / 0.84 / 0.76)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경계복원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내용: 50필지이하 / 51~100필지 / 101~500필지 / 501~1000필지 / 1000필지초과; 계수: 1.00 / 0.97 / 0.91 / 0.84 / 0.76)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⑤ 측점계수 본 품은 5점의 경계점을 복원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복원한 경계점의 수가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내용: 5점이하 / 6점-10점 / 11점-15점 / 16점-20점 / 21점-25점 / 26점-30점 / 30점초과시 매5점마다; 계수: 0.00 / 0.05 / 0.10 / 0.15 / 0.20 / 0.25 / 0.05×n)	⑥ 측점계수 본 품은 5점의 경계점을 복원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복원한 경계점의 수가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내용: 5점이하 / 6점~10점 / 11점~15점 / 16점~20점 / 21점~25점 / 26점~30점 / 30점초과시 매5점마다; 계수: 1.00 / 1.05 / 1.10 / 1.15 / 1.20 / 1.25 / 1.05×n)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및 계수보완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보완	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⑦ 기타사항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⑦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경계복원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⑧ 기타사항 · 경계복원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 근거 명시 · 법원감정 업무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 요청시 수수료 가산 근거 마련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td>
<td>
[계산예]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시지역의 1필지 면적이 1,500㎡인 토지를 경계복원 할 경우
㉠기본계수 : 1.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75
합계 : 2.15 = (㉠+㉡+㉢)
<table>
<tr><th>구 분 \ 내 용</th><th>수 량</th><th>단 가</th><th>금 액</th></tr>
<tr><td>지 적 기 사</td><td>1.02×2.15=2.19</td><td>w_1</td><td>W_1=2.19×w_1</td></tr>
<tr><td>지 적 산 업 기 사</td><td>1.51×2.15=3.25</td><td>w_2</td><td>W_2=3.25×w_2</td></tr>
<tr><td>지 적 기 능 사</td><td>0.78×2.15=1.68</td><td>w_3</td><td>W_3=1.68×w_3</td></tr>
<tr><td>계</td><td></td><td></td><td>∑W</td></tr>
</table>
[결정단가] = ∑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② 지가계수 적용단가
일반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의 경우 ㎡당 공시지가 2,500원, 수치지역인 토지 1필지 1,000㎡의 토지를 복원점 6점으로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기본계수 : 1.0 ㉡면적계수 : 0.62 ㉢측점계수 : 0.05 ㉣지가계수 : -0.30 | 합계 : 1.37 = ㉠+㉡+㉢+㉣
<table>
<tr><th>구 분 \ 내 용</th><th>수 량</th><th>단 가</th><th>금 액</th></tr>
<tr><td>지 적 기 사</td><td>1.02×1.37=1.40</td><td>w_1</td><td>W_1=1.40×w_1</td></tr>
<tr><td>지 적 산 업 기 사</td><td>1.51×1.37=2.07</td><td>w_2</td><td>W_2=2.07×w_2</td></tr>
<tr><td>지 적 기 능 사</td><td>0.78×1.37=1.07</td><td>w_3</td><td>W_3=1.07×w_3</td></tr>
<tr><td>계</td><td></td><td></td><td>∑W</td></tr>
</table>
[결정단가] = ∑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주]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td>
<td>・계산예 보완
-자격종목 통합 및 예시 구체화</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33 지적삼각측량	보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1.48)	1	1	1			(1.48)	(1.48)	(1.48)			( )는 내업임
계획준비		(1.13)	1	1				(1.13)	(1.13)				
답사		2.78		1	1	1			2.78	2.78	2.78		
선점		1.57	1	1	1			1.57	1.57	1.57			
조표		3.65		1	1	1	1		3.65	3.65	3.65	3.65	
관측		3.74		1	1	1			3.74	3.74	3.74		
계산		(1.65)		1	1				(1.65)	(1.65)			
등사		(1.48)			1					(1.48)			
준비도	작성	(1.74)				1					(1.74)		
	확인	(0.26)	1					(0.26)					
기지부합여부확인		3.22		1	1	1			3.22	3.22	3.22		
성과작성	계산부	(1.48)		1					(1.48)				
	대장	(1.70)			1					(0.70)			
점검		(0.78)	1					(0.78)					
성과인계		(0.44)		1					(0.44)				
소계	외업	17.22						1.57	14.96	14.96	13.39	3.65	
	내업	(11.14)						(3.65)	(6.18)	(5.31)	(1.74)		
합계		28.36						5.22	21.14	20.27	15.13	3.65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지적삼각점측량 실시에 따른 품이다.

② 표고계수

본 품은 작업지역의 표고 500m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500m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값 이내를 가산할 수 있다.

표 고 명	가 산 범 위	비 고
500m~1,000m	20%	
1,000m이상	40%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1.48)	1	2			(1.48)	(2.96)			( )는 내업임
계획준비		(1.13)	1	1			(1.13)	(1.13)			
답사		2.78		2	1			5.56	2.78		
선점		1.57	1	2			1.57	3.14			
조표		3.65		2	1	1		7.30	3.65	3.65	
관측		3.74		2	1			7.48	3.74		
계산		(1.65)		2				(3.30)			
등사		(1.48)		1				(1.48)			
준비도	작성	(1.74)			1				(1.74)		
	확인	(0.26)	1				(0.26)				
기지부합여부확인		3.22		2	1			6.44	3.22		
성과작성	계산부	(1.48)		1				(1.48)			
	대장	(1.70)		1				(0.70)			
점검		(0.78)	1				(0.78)				
성과인계		(0.44)		1				(0.44)			
소계	외업	**14.96**					1.57	29.92	13.39	3.65	
	내업	**(12.14)**					(3.65)	(11.49)	(1.74)		
합계		**27.10**					5.22	41.41	15.13	3.65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지적삼각점측량 실시에 따른 품이다.

② 표고계수

본 품은 작업지역의 표고 500m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500m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값 이내를 가산할 수 있다.

표 고 명	가 산 범 위	비 고
500m~1,000m	20%	
1,000m초과	40%	

·소계 오류수정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보완	③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부 1부 ㉯ 지적삼각측량 계산부 1부 ㉰ 지적삼각망도 1부 ㉱ 점의조서 1부 ④ 기타사항 ·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여점 3점, 구점 5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지적삼각보조점 측량수수료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다만, 지적법령에 의거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삼각측량방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지적삼각측량품을 적용한다. · 벌채보상비, 재료의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관측기계는 GPS, 토탈스테이션, 광파거리측거기, 각 관측 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	③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부 1부 ㉯ 지적삼각측량 계산부 1부 ㉰ 지적삼각망도 1부 ㉱ 점의조서 1부 ④ 기타사항 ·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여점 3점, 구점 5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지적삼각보조점 측량수수료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다만, 지적법령에 의거 영구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삼각측량방법에 준하였을 경우에는 지적삼각측량품을 적용한다. · 벌채보상비, 재료의 소모품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관측기계는 GPS, 토탈스테이션, 광파거리측거기, 각 관측 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 근거 명시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
[계산예]
지구에 지적삼각측량점을 구점 10점, 여점 3점을 측량할 경우의 기본품 (지적삼각측량)
<table>
<tr><th>구 분</th><th>수 량</th><th>단가</th><th>금 액</th></tr>
<tr><td>지 적 기 사</td><td>$22.46 \times \frac{13}{10} = 29.19$</td><td>$w_1$</td><td>$W_1=29.19 \times w_1$</td></tr>
<tr><td>지 적 산 업 기 사</td><td>$20.98 \times \frac{13}{10} = 27.27$</td><td>$w_2$</td><td>$W_2=27.27 \times w_2$</td></tr>
<tr><td>지적기능산업기사</td><td>$13.67 \times \frac{13}{10} = 17.17$</td><td>$w_3$</td><td>$W_3=17.77 \times w_3$</td></tr>
<tr><td>지 적 기 능 사</td><td></td><td>w_4</td><td>W_4</td></tr>
<tr><td>인 부</td><td>$5.84 \times \frac{13}{10} = 7.59$</td><td>$w_5$</td><td>$W_5=7.59 \times w_5$</td></tr>
<tr><td>계</td><td></td><td></td><td>ΣW</td></tr>
</table>
</td>
<td>
[계산예]
지구에 지적삼각측량점을 구점 10점, 여점 3점을 측량할 경우의 기본품 (지적삼각측량)
<table>
<tr><th>구 분</th><th>수 량</th><th>단 가</th><th>금 액</th></tr>
<tr><td>지 적 기 사</td><td>5.22</td><td>w_1</td><td>$W_1=5.22 \times w_1$</td></tr>
<tr><td>지적산업기사</td><td>41.41</td><td>w_2</td><td>$W_2=41.41 \times w_2$</td></tr>
<tr><td>지 적 기 능 사</td><td>15.13</td><td>w_3</td><td>$W_3=15.13 \times w_3$</td></tr>
<tr><td>인 부</td><td>3.65</td><td>w_4</td><td>$W_4= 3.65 \times w_4$</td></tr>
<tr><td>계</td><td></td><td></td><td>ΣW</td></tr>
</table>
[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8
[합 계] = [단가] × 13

[주]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 · 기계경비 · 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 · 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td>
<td>· 계산예 보완
-자격종목 통합 및 예시 구체화</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34 지적도근측량	보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합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비고
자료조사		(1.12)	1		1			(1.12)		(1.12)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56)	1	1	1			(0.56)	(0.56)	(0.56)			
답사		0.84		1	1	1			0.84	0.84	0.84		
선점		1.96	1	1	1		1	1.96	1.96	1.96		1.96	
관측		3.92		1	1	1			3.92	3.92	3.92		
계산		(1.68)		1	1				(1.68)	(1.68)			
등사		(1.12)			1					(1.12)			
준비도작성		(1.12)				1					(1.12)		
기지부합여부확인		2.24		1	1	1			2.24	2.24	2.24		
성과작성		(1.12)		1	1				(1.12)	(1.12)			
점검		(0.56)	1					(0.56)					
성과인계		(0.56)		1					(0.56)				
소계	외업	8.96						1.96	8.96	8.96	7.00	1.96	
	내업	(7.84)						(2.24)	(3.92)	(5.60)	(1.12)		
합계		16.80						4.20	12.88	14.56	8.12	1.96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 실시에 따른 품이다.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합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비고
자료조사		(1.12)	1	1			(1.12)	(1.12)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56)	1	2			(0.56)	(1.12)			
답사		0.84		2	1			1.68	0.84		
선점		1.96	1	2		1	1.96	3.92		1.96	
관측		3.92		2	1			7.84	3.92		
계산		(1.68)		2				(3.36)			
등사		(1.12)		1				(1.12)			
준비도작성		(1.12)			1				(1.12)		
기지부합여부확인		2.24		2	1			4.48	2.24		
성과작성		(1.12)		2				(2.24)			
점검		(0.56)	1				(0.56)				
성과인계		(0.56)		1				(0.56)			
소계	외업	8.96					1.96	17.92	7.00	1.96	
	내업	(7.84)					(2.24)	(9.52)	(1.12)		
합계		16.80					4.20	27.44	8.12	1.96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 실시에 따른 품이다.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td>
<td>② 가산계수
방위각법에 의한 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배각법에 의하여 측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분</th><th>계수</th><th>비고</th></tr>
<tr><td>방위각법</td><td>0.00</td><td></td></tr>
<tr><td>배각법</td><td>0.37</td><td></td></tr>
</table>
③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부 1부.
㉯ 도근측량부 1부.
㉰ 도근망도 1부.
④ 기타사항
·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도근점 50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적도근측량을 위한 지적삼각측량 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지적삼각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는 지적도근점 표시를 하기 위한 재료 표지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 거리측정 등 관측기계는 GPS, 토탈스테이션, 광파거리측거기, 각 관측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td>
<td>② 가산계수
방위각법에 의한 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배각법에 의하여 측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분</th><th>계수</th><th>비고</th></tr>
<tr><td>방위각법</td><td><u>1.00</u></td><td></td></tr>
<tr><td>배각법</td><td><u>1.37</u></td><td></td></tr>
</table>
③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품이 포함되어 있다.
㉮ 관측부 1부.
㉯ 도근측량부 1부.
㉰ 도근망도 1부.
④ 기타사항
· 본 품은 축척과 측량지역의 대·소에 불구하고 도근점 50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는 지적도근측량을 위한 지적삼각측량 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지적삼각측량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는 지적도근점 표시를 하기 위한 재료 표지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 거리측정 등 관측기계는 GPS, 토탈스테이션, 광파거리측거기, 각 관측장비로 한다.
<u>·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u>
· 본 품에 있어 매설작업에 따르는 자재대 및 운반비 인부임은 별도로 계상한다.
<u>·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u></td>
<td>· 계수 구체적 표현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 근거 명시</td>
</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
[계산예]

지구에 <u>지적도근 삼각측량점을 1등도선으로써</u> 배각법에 의하여 300점 측량할 경우

① 기본품
<table>
<tr><th>구 분</th><th>수 량</th><th>단 가</th><th>금 액</th></tr>
<tr><td>지 적 기 사</td><td>$32.85 \times \frac{300}{160} = 61.59$</td><td>$w_1$</td><td>$W_1=61.59 \times w_1$</td></tr>
<tr><td><u>지적산업기사</u></td><td>$35.03 \times \frac{300}{160} = 65.68$</td><td>$w_2$</td><td>$W_2=65.68 \times w_2$</td></tr>
<tr><td><u>지적기능산업기사</u></td><td>$19.54 \times \frac{300}{160} = 36.63$</td><td>$w_3$</td><td>$W_3=36.63 \times w_3$</td></tr>
<tr><td>지 적 기 능 사</td><td>$18.02 \times \frac{300}{160} = 33.78$</td><td>$w_4$</td><td>$W_4=33.78 \times w_4$</td></tr>
<tr><td>인 부</td><td>$3.31 \times \frac{300}{160} = 6.20$</td><td>$w_5$</td><td>$W_5=6.20 \times w_5$</td></tr>
<tr><td>계</td><td></td><td></td><td>ΣW</td></tr>
</table>
② <u>가산품 1등도선에 배각법</u>
$\Sigma W1 = \Sigma W \times \underline{0.40}$
합계 = $\Sigma W + \Sigma W1$
</td>
<td>
[계산예]

<u>① 기준단가</u>
<u>지구에 지적도근측량을 배각법에 의하여 300점을 측량할 경우</u>

<u>㉠기본계수 : 1.0 ㉡가산계수 : 0.37 | 합계 : 1.37 = (㉠+㉡)</u>
<table>
<tr><th>구 분</th><th>수 량</th><th>단 가</th><th>금 액</th></tr>
<tr><td>지 적 기 사</td><td><u>4.20×1.37 = 5.75</u></td><td>w_1</td><td>$W_1= 5.75 \times w_1$</td></tr>
<tr><td><u>지적산업기사</u></td><td><u>27.44×1.37 = 37.59</u></td><td>w_2</td><td>$W_2=37.59 \times w_2$</td></tr>
<tr><td>지 적 기 능 사</td><td><u>8.12×1.37 =11.12</u></td><td>w_3</td><td>$W_3=11.12 \times w_3$</td></tr>
<tr><td>인 부</td><td><u>1.96×1.37 = 2.69</u></td><td>w_4</td><td>$W_4= 2.69 \times w_4$</td></tr>
<tr><td>계</td><td></td><td></td><td>ΣW</td></tr>
</table>
<u>[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50</u>

<u>[합 계] = [단가] × 300</u>
</td>
<td>· 계산예 보완
–자격종목 통합 및 예시 구체화</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35 지적확정측량 1.시가지 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보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 표준품셈 재조사 기본품 보완 ·계수오류 수정 ·[주]내용의 재정리 ·면적계수 등급 세분화 -기준면적 보완

1. 시가지 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계획준비		11.22	1	1				11.22	11.22				( )는 외업임
가구측량		(118.71)	1	1	2			(118.71)	(118.71)	(237.42)			
획지측량		(110.65)	1	1		2		(110.65)	(110.65)		(221.30)		
확정도작성		7.48	1	1	1			7.48	7.48	7.48			
면적측정		28.06	1	1	1			28.06	28.06	28.06			
도부작성		39.10	1	1	1			39.10	39.10	39.10			
조서작성		5.57		1	1				5.57	5.57			
소계	외업	(229.36)						(229.36)	(229.36)	(237.42)	(221.30)		
	내업	91.43						85.86	91.43	80.21			
합계		320.79						315.22	320.79	317.63	221.30		

[주] ① 시가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지적법 제26조 확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세부측량을 말한다.

② 축척은 1/300로 한다. 다만, 측량지역의 규모가 작고 협장하거나 대상지역이 산재하여 1/500의 축척으로 지적도를 비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 시·도와 협의하여 인접지의 도면 축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본 품에 의한 면적측정은 구적기에 의하여 3회이상 측정하였으며 디지탈면적계에 의할 때에는 디지탈 면적계에 의한 품으로 한다.

④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좌표 전개기로 전개하였다.

⑤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직접측정에 의하여 측정하였으며, 광파기 또는 전파기를 사용할 때에는 전파기 또는 광파기에 의한 품으로 한다.

⑥ 본 품에 의한 지적도 조제는 수공으로 한 것이다.

⑦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⑧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200,000㎡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측량지구면적 30,000㎡이하인 경우에도 30,000㎡의 품으로 한다.

⑨ 중심점, 가구점, 필계점, 말박기 측량과 계산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본 품의 50%의 값을 가산한 품으로 한다.

21-35-1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계획준비		(3.42)	1	1			(3.42)	(3.42)			( )는 내업임
자료조사		(4.03)		1				(4.03)			
현장조사		4.82	1	2			4.82	9.64			
등사도		(3.58)		1				(3.58)			
지구계준비도	작성	(6.19)		1				(6.19)			
	확인	(0.92)	1				(0.92)				
지구계	측량	9.94	1	2	1		9.94	19.88	9.94		
	결과도작성	(6.58)	1	1			(6.58)	(6.58)			
가구점	측량	13.22	1	2	1		13.22	26.44	13.22		
	계산	(10.86)	1	1			(10.86)	(10.86)			
필계점	측량	21.39	1	2	1		21.39	42.78	21.39		
	계산	(10.89)	1	1			(10.89)	(10.89)			
중심점계산		(8.40)	1	1			(8.40)	(8.40)			
말박기측량	측량	9.18	1	2	1		9.18	18.36	9.18		
	계산	(9.44)	1	1			(9.44)	(9.44)			
좌표면적계산		(8.43)	1	1			(8.43)	(8.43)			
결과도작성		(3.10)		2				(6.20)			
성과작성		(8.20)		2				(16.40)			
조서작성		(5.88)		2				(11.76)			
납품도서류작성		(10.02)		2				(20.04)			
점검		(5.01)	1				(5.01)				
성과설명및인계		(2.58)	1				(2.58)				
소계	외업	58.55					58.55	117.10	53.73		
	내업	(107.53)					(66.53)	(126.22)			
합계		166.08					125.08	243.32	53.73		

[주] ①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지적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세부측량을 말한다.

② 면적체감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하며,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
⑩ 측량지구의 면적이 20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단,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table>
<tr><th>면적별
구분</th><th>20만㎡
이하</th><th>20만
~50만㎡</th><th>50만
~100만㎡</th><th>100만
~200만㎡</th><th>200만
~300만㎡</th><th>300만㎡
이상</th></tr>
<tr><td>시 가 지
구획정리</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d>0.6</td></tr>
</table>
⑪ 기준면적에 필요한 기초점수는 지적삼각점 3점 지적도근점 90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 경우의 품은 별도 가산한다.
⑫ 소관청이 다른 경우에는 소관청 별로 품을 계상한다.
⑬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측량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면적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거리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망도 1부
㉳ 확정도 사본 1부
㉴ 확정 종합도 1부
㉵ 지구내 종전도 1부
㉶ 신구대조도 1부
㉷ 지구계 분할도사 1부
㉸ 행정구역 변경도 1부
㉹ 국유지 무상양여도 1부
㉺ 국유지 증여도 1부
㉻ 확정도 1부
㉼ 확정지적조서 3부
㉽ 행정구역변경조서 1부
㉾ 국유지 무상양여조서 1부
㉿ 국유지 증여지조서 1부
㉀ 지적도 조제 1부
</td>
<td>
<table>
<tr><th>구분
내용</th><th>10만㎡
이하</th><th>10만㎡초과
~50만㎡</th><th>50만㎡초과
~100만㎡</th><th>100만㎡초과
~200만㎡</th><th>200만㎡초과
~300만㎡</th><th>300만㎡
초과</th></tr>
<tr><td>계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d>0.5</td></tr>
</table>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측량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좌표면적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가구계점, 필지경계점 거리계산부 각1부
㉲ 지구계점 망도 1부
㉳ 확정도 사본 1부
㉴ 확정 종합도 1부
㉵ 지구내 종전도 1부
㉶ 신구대조도 1부
㉷ 지구계 분할도사 1부
㉸ 행정구역 변경도 1부
㉹ 국유지 무상양여도 1부
㉺ 국유지 증여도 1부
㉻ 확정도 1부
㉠ 확정지적조서 3부
㉡ 행정구역변경조서 1부
㉢ 국유지 무상양여조서 1부
㉣ 국유지 증여지조서 1부
㉤ 지적도 작성 1부
④ 기타사항
· 축척은 1/500로 한다. 다만, 측량지역의 규모가 작고 협장하거나 대상지역이 산재하여 1/500의 축척으로 지적도를 비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 시·도와 협의하여 인접지의 도면 축척으로 시행할 수 있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 등의 측량기계는 토탈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 관측 장비로 한다.
</td>
<td>·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 현실적인 작업방법으로 내용보완</td>
</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
[계산예]
지구의 면적이 500,000㎡인 <u>시가지를 확정측량 할</u> 겨우(지적삼각 3점, 지적도근점 200점)
① 기본품
<table>
<tr><th>구 분</th><th>수 량</th><th>단가</th><th>금 액</th></tr>
<tr><td>지 적 기 사</td><td>$315.22 \times \frac{500,000}{200,000} = 788.05$</td><td>$w_1$</td><td>$W_1=788.05 \times w_1$</td></tr>
<tr><td><u>지적산업기사</u></td><td>$320.79 \times \frac{500,000}{200,000} = 801.97$</td><td>$w_2$</td><td>$W_2=801.97 \times w_2$</td></tr>
<tr><td><u>지적기능산업기사</u></td><td>$317.63 \times \frac{500,000}{200,000} = 794.07$</td><td>$w_3$</td><td>$W_3=794.07 \times w_3$</td></tr>
<tr><td>지 적 기 능 사</td><td>$221.30 \times \frac{500,000}{200,000} = 553.25$</td><td>$w_4$</td><td>$W_4=553.25 \times w_4$</td></tr>
<tr><td>계</td><td></td><td></td><td>ΣW</td></tr>
</table>
② 지적삼각 측량품 : ΣW1
③ 지적도근 측량품 : ΣW2
합계 = ΣW+ΣW1+ΣW2
</td>
<td>
<u>· 본 품에 의한 지적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u>
<u>·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u>
<u>· 측량지구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품으로 한다.</u>
<u>· 말박기측량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말박기측량 품을 제외한다.</u>
<u>·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u>
<u>·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u>
<u>·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u>

[계산예]
지구의 면적이 500,000㎡인 <u>토지구획정리를 확정측량 할 경</u>우(지적삼각 3점, 지적도근점 200점)
<u>㉠기본계수(10만㎡까지) : 1.0 ㉡기본계수(10만㎡초과50㎡만까지) : 0.9</u>
㉮ 기본단가(10만㎡까지)
<table>
<tr><th>구 분</th><th>수 량</th><th>단가</th><th>금 액</th></tr>
<tr><td>지 적 기 사</td><td><u>125.08 × 1.0=125.08</u></td><td>w_1</td><td>$W_1=125.08 \times w_1$</td></tr>
<tr><td><u>지 적 산 업 기 사</u></td><td><u>243.32 × 1.0=243.32</u></td><td>w_2</td><td>$W_2=243.32 \times w_2$</td></tr>
<tr><td>지 적 기 능 사</td><td><u>53.73 × 1.0=53.73</u></td><td>w_3</td><td>$W_3= 53.73 \times w_3$</td></tr>
<tr><td>계</td><td></td><td></td><td>ΣW</td></tr>
</table>
<u>[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100,000㎡</u>
<u>[합계ΣW1] = (단가 × 100,000)</u>
</td>
<td>·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 근거 명시

· 계산예 보완 –자격종목 통합 및 예시 구체화</td>
</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td></td><td>보완</td><td></td><td>
㉯ 체감계수 적용단가(20만㎡초과 50만㎡까지)
<table>
<tr><th>구 분</th><th>수 량</th><th>단가</th><th>금 액</th></tr>
<tr><td>지 적 기 사</td><td>125.08 × 0.9=112.57</td><td>w_1</td><td>W_1=112.57×w_1</td></tr>
<tr><td>지적산업기사</td><td>243.32 × 0.9=218.99</td><td>w_2</td><td>W_2=218.99×w_2</td></tr>
<tr><td>지 적 기 능 사</td><td>53.73 × 0.9=48.36</td><td>w_3</td><td>W_3= 48.36×w_3</td></tr>
<tr><td>계</td><td></td><td></td><td>∑W</td></tr>
</table>
[결정단가] = (∑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100,000㎡
[합계∑W2] = (단가 × 400,000)

② 지적삼각 측량비 : ∑W3
③ 지적도근 측량비 : ∑W4
[총 계] = ∑W1+∑W2+∑W3+∑W4
</td><td>· 계산예 보완
-자격종목 통합 및 예시 구체화</td></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35 지적확정측량 2.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보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표준품셈 재조사 기본품 보완 ·[주]내용의 재정리 ·면적계수 등급 세분화 -기준면적 보완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현 행

2.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계획준비	2.35	1	1				2.35	2.35				( )는 외업임
지구측량	(26.66)	1	1	1	1		(26.66)	(26.66)	(26.66)	(26.66)		
세부측량	(67.03)	1	1	1	1		(67.03)	(67.03)	(67.03)	(67.03)		
확정도작성	5.74	1	1	1			5.74	5.74	5.74			
면적측정	37.82	1	1	1			37.82	37.82	37.82			
도부작성	43.38	1	1	1			43.38	43.38	43.38			
조서작성	5.64		1	1				5.64	5.64			
소계 외업	(93.69)						(93.69)	(93.69)	(93.69)	(93.69)		
소계 내업	94.93						89.29	94.93	92.58			
합계	188.62						182.98	188.62	186.27	93.69		

[주] ①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이라함은 지적법 제26조 규정의 농어촌정비사업중 "경지정리" 사업에 수반되는 세부측량을 말한다.

② 경지구획정리의 축척은 1/1,000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③ 본 품에 의한 면적 측정은 구적기에 의하여 3회이상 측정하였으며 디지탈면적계에 의할 때에는 디지탈면적계에 의한 품으로 한다.

④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좌표 전개기로 전개하였다.

⑤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직접 측정에 의하여 측정하였으며, 광파기 또는 전파기를 사용할 때는 전파기 또는 광파기에 의한 품으로 한다.

⑥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⑦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1,500,000㎡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측량 지구면적이 100,000㎡이하인 경우에도 100,000㎡의 품으로 한다.

⑧ 측량지구의 면적이 1,50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단,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 정

21-35-2 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적요
계획준비		(2.63)	1	1			(2.63)	(2.63)			( )는 내업임
자료조사		(3.40)		2				(6.80)			
현장조사		3.90	1	1			3.90	3.90			
등사도		(6.00)		2				(12.00)			
지구계 준비도	작성	(7.83)	1	2	1		(7.83)	(15.66)	(7.83)		
	확인	(1.05)	1				(1.05)				
지구계	측량	14.53	1	2	1		14.53	29.06	14.53		
	결과도작성	(15.48)	1	2	1		(15.48)	(30.96)	(15.48)		
필계점	측량	21.73	1	2	1		21.73	43.46	21.73		
	계산	(16.70)	1	1			(16.70)	(16.70)			
좌표면적계산		(15.75)	1	1			(15.75)	(15.75)			
결과도작성		(3.03)	1	2	1		(3.03)	(6.06)	(3.03)		
성과도작성		(9.68)	1	2	1		(9.68)	(19.36)	(9.68)		
조서작성		(5.88)		2	1			(11.76)	(5.88)		
납품도서류작성		(8.45)	1	2	1		(8.45)	(16.90)	(8.45)		
점검		(5.65)	1				(5.65)				
성과설명 및 인계		(1.40)	1				(1.40)				
소계	외업	40.16					40.16	76.42	36.26		
	내업	(102.93)					(87.65)	(154.58)	(50.35)		
합계		143.09					127.81	231.00	86.61		

[주] ①경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이라함은 지적법 제26조 규정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에 수반되는 세부측량을 말한다.

② 면적체감계수

측량지구의 면적이 1,00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단,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 면적별	100만㎡ 이하	100만㎡초과 ~300만㎡	300만㎡초과 ~500만㎡	500만㎡초과 ~800만㎡	800만㎡초과 ~1000만㎡	1000만㎡ 초과
계수	1.0	0.9	0.8	0.7	0.6	0.5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
<table>
<tr><th>면적별
구분</th><th>300만㎡
이하</th><th>300만
~500만㎡</th><th>500만
~800만㎡</th><th>800만
~1000만㎡</th><th>1000만㎡
이상</th></tr>
<tr><td>경 지
구획정리</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⑨ 기준면적에 필요한 기초점수는 지적삼각점 12점 지적도근점 200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 경우의 품은 별도 가산한다.
⑩ 소관청이 다른 경우에는 소관청 별로 품을 계상한다.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면적 측정부 1부
㉯ 신구대조도 1부
㉰ 행정구역 변경도 1부
㉱ 국유지 무상 양여 양수도 1부
㉲ 확정측량 종합도 1부
㉳ 종전도 1부
㉴ 일람도 1부
㉵ 확정지적조서 1부
</td>
<td>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면적측정부 1부
㉯ 신구대조도 1부
㉰ 행정구역변경도 1부
㉱ 국유지 무상 양여 양수도 1부
㉲ 확정측량 종합도 1부
㉳ 종전도 1부
㉴ 일람도 1부
㉵ 확정지적조서 1부
④ 기타사항
· 경지구획정리의 축척은 1/1,000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 본 품에 의한 면적측정은 구적기에 의하여 3회이상 측정하였으며, 디지털면적계에 의할 때에는 디지털면적계에 의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좌표 전개기로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직접측정에 의하여 측정하였으며, 광파기 또는 전파기를 사용할 때에는 전파기 또는 광파기에 의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는 지구계 분할측량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작업상 기초측량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초측량 품을 가산한다.
·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0㎡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측량지구면적이 100,000㎡ 이하인 경우에는 100,000㎡의 품으로 한다.
· 중심점·가구점, 필계점, 말박기 측량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본 품의 50%의 값을 적용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td>
<td>·[주]내용의 재정리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 근거 명시</td>
</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
[계산예]
지구의 면적이 700,000㎡ <u>경지</u>를 확정측량할 경우
① 기본품
<table>
<tr><th>구 분</th><th>수 량</th><th>단가</th><th>금 액</th></tr>
<tr><td>지 적 기 사</td><td>$182.98 \times \frac{700,000}{1,500,000} = 85.39$</td><td>$w_1$</td><td>$W_1=85.39 \times w_1$</td></tr>
<tr><td><u>지적산업기사</u></td><td>$188.62 \times \frac{700,000}{1,500,000} = 88.02$</td><td>$w_2$</td><td>$W_2=88.02 \times w_2$</td></tr>
<tr><td><u>지적기능산업기사</u></td><td>$186.27 \times \frac{700,000}{1,500,000} = 86.92$</td><td>$w_3$</td><td>$W_3=86.92 \times w_3$</td></tr>
<tr><td>지 적 기 능 사</td><td>$93.69 \times \frac{700,000}{1,500,000} = 43.72$</td><td>$w_4$</td><td>$W_4=43.72 \times w_4$</td></tr>
<tr><td>계</td><td></td><td></td><td>ΣW</td></tr>
</table>
② 지적삼각 측량품 : Σw_1
③ 지적도근 측량품 : Σw_2
합계=$\Sigma w+\Sigma w_1+\Sigma w_2$
</td>
<td>
<u>[계산예]</u>
<u>지구의 면적이 1,700,000㎡인 경지구획정리를 확정측량 할 경우</u>
<u>㉠기본계수(100만㎡까지) : 1.0 ㉡기본계수(100만㎡초과300㎡만까지) : 0.9</u>
<u>㉮ 기본단가(100만㎡까지)</u>
<table>
<tr><th>구 분</th><th>수 량</th><th>단가</th><th>금 액</th></tr>
<tr><td>지 적 기 사</td><td>127.81 × 1.0=127.81</td><td>w_1</td><td>$W_1=127.81 \times w_1$</td></tr>
<tr><td>지 적 산 업 기 사</td><td>231.00 × 1.0=231.00</td><td>w_2</td><td>$W_2=231.00 \times w_2$</td></tr>
<tr><td>지 적 기 능 사</td><td>86.61 × 1.0=86.61</td><td>w_3</td><td>$W_3= 86.61 \times w_3$</td></tr>
<tr><td>계</td><td></td><td></td><td>ΣW</td></tr>
</table>
<u>[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1,000,000㎡</u>
<u>[합계ΣW1] = (단가 × 1,000,000)</u>
<u>㉯ 체감계수 적용단가 (100만㎡초과 300만㎡까지)</u>
<table>
<tr><th>구 분</th><th>수 량</th><th>단가</th><th>금 액</th></tr>
<tr><td>지 적 기 사</td><td>127.81 × 0.9=115.03</td><td>w_1</td><td>$W_1=115.03 \times w_1$</td></tr>
<tr><td>지 적 산 업 기 사</td><td>231.00 × 0.9=207.90</td><td>w_2</td><td>$W_2=207.90 \times w_2$</td></tr>
<tr><td>지 적 기 능 사</td><td>86.61 × 0.9=77.95</td><td>w_3</td><td>$W_3= 77.95 \times w_3$</td></tr>
<tr><td>계</td><td></td><td></td><td>ΣW</td></tr>
</table>
<u>[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1,000,000㎡</u>
<u>[합계ΣW2] = (단가 × 700,000)</u>
<u>㉰ 지적삼각 측량비 : ΣW3</u>
<u>㉱ 지적도근 측량비 : ΣW4</u>
<u>[총 계] = ΣW1+ΣW2+ΣW3+ΣW4</u>
</td>
<td>·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35 지적확정측량 3. 야산개발사업 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삭제	**3.** 야산개발사업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3. 삭제**	· 관련법령 폐지 - 미사용종목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합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비고
계획준비	4.29	1	1				4.29	4.29				( )는 외업임
지구측량	(48.80)	1	1	1	1		(48.80)	(48.80)	(48.80)	(48.80)		
세부측량	(122.67)	1	1	1	1		(122.67)	(122.67)	(122.67)	(122.67)		
확정도작성	10.50	1	1	1			10.50	10.50	10.50			
면적측정	69.21	1	1	1			69.21	69.21	69.21			
도부작성	79.39	1	1	1			79.39	79.39	79.39			
조서작성	10.32		1	1				10.32	10.32			
소계 외업	(171.47)						(171.47)	(171.47)	(171.47)	(171.47)		
소계 내업	173.71						163.39	173.71	169.42			
합계	345.18						334.86	345.18	340.89	17		

[주] ① 야산개발사업 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이라함은 지적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지적측량을 말한다.

②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야산개발 사업구획정리에 있어서는 축척은 1/1,000로 하고, 지역이 작고 협장하거나 산재한 지역을 측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시·도와 협의하여 인접지의 도면 축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본 품에 의한 면적 측정은 구적기에 의하여 3회이상 측정하였으며 디지탈 면적계에 의할 때에는 디지탈면적계에 의한 품으로 한다.

④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좌표 전개기로 전개하였다.

⑤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은 직접 측정에 의하여 측정하였으며, 광파기 또는 전파기를 사용할 때는 전파기 또는 광파기에 의한 품으로 한다.

⑥ 본 품에는 등록전환측량비 및 지구계 분할측량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⑦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1,500,000㎡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측량면적이 100,000㎡이하인 경우에는 100,000㎡의 품으로 한다.

⑧ 측량지구의 면적이 1,500,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한다.
단,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 면적별	300만㎡ 이하	300만 ~500만㎡	500만 ~800만㎡	800만 ~1000만㎡	1000만㎡ 이상
야산개발사업경지정리	1.0	0.9	0.8	0.7	0.6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⑨ 기준면적에 필요한 기초점수는 지적삼각점 12점, 지적도근점 200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 경우의 품은 별도 가산한다. ⑩ 소관청이 다른 경우에는 소관청별로 품을 계상한다. ⑪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면적 측정부 1부 ㉯ 신구대조도 1부 ㉰ 행정구역 변경도 1부 ㉱ 국유지 무상양여 양수도 1부 ㉲ 확정종합도 1부 ㉳ 종전도 1부 ㉴ 일람도 1부 ㉵ 지적확정조서 1부 [계산예] 지구의 면적이 500,000㎡인 야산개발사업지구를 확정측량할 경우 ① 기본품 (구분 / 수량 / 단가 / 금액) 지적기사: $334.86\times\frac{500,000}{1,500,000}=111.62$, w_1, $W_1=111.62\times w_1$ 지적산업기사: $345.18\times\frac{500,000}{1,500,000}=115.06$, w_2, $W_2=115.06\times w_2$ 지적기능산업기사: $340.89\times\frac{500,000}{1,500,000}=113.62$, w_3, $W_3=113.62\times w_3$ 지적기능사: $171.47\times\frac{500,000}{1,500,000}=57.15$, w_4, $W_4=57.15\times w_4$ 계: $\sum W$ ② 지적삼각측량품 : $\sum w_1$ ③ 지적도근측량품 : $\sum w_2$ 합계=$\sum w+\sum w_1+\sum w_2$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36-1 지적도작성	보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데이터확인	(0.20)	1	1				(0.20)	(0.20)				( )는 내업임
자료변환	(0.03)		1					(0.03)				
도곽구획	(0.02)		1					(0.02)				
도면작성	(0.25)		1					(0.25)				
대조수정	(0.10)	1	1				(0.10)	(0.10)				
점검	(0.02)	1	1				(0.02)	(0.02)				
성과인계	(0.01)	1	1				(0.01)	(0.01)				
합계	(0.63)						(0.32)	(0.63)				

[주] ① 본 품은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도면과 임야복구측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적도를 작성하는 때 작업 품이다.

②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도 1매.

④ 기타사항

· 본 품은 지적도 1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지적도를 작성할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의한 지적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데이터확인	(0.20)	1	1			(0.20)	(0.20)			( )는 내업임
자료변환	(0.03)		1				(0.03)			
도곽구획	(0.02)		1				(0.02)			
도면작성	(0.25)		1				(0.25)			
대조수정	(0.10)	1	1			(0.10)	(0.10)			
점검	(0.02)	1	1			(0.02)	(0.02)			
성과인계	(0.01)	1	1			(0.01)	(0.01)			
합계	(0.63)					(0.32)	(0.63)			

[주] ① 본 품은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도면과 임야복구측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적도를 작성하는 때 작업 품이다.

②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내용	토 지	임 야
계수	1.12	1.36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도 1매.

④ 기타사항

· 본 품은 지적도 1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지적도를 작성할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의한 지적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축척별 개념을 지적공부등록 형태로 전환 →수수료체계 단순화, 국민의 이해증진(시행중)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계상근거 명시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36-2 지적도 재작성	보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합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비고
데이터확인	(0.07)	1	1				(0.07)	(0.07)				( )는 내업임
도면작성	(0.34)		1					(0.34)				
대조수정	(0.10)	1	1				(0.10)	(0.10)				
성과작성	(0.13)		1					(0.13)				
점검	(0.02)	1	1				(0.02)	(0.02)				
성과인계	(0.02)	1	1				(0.02)	(0.02)				
합계	(0.68)						(0.21)	(0.68)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적공부가 더럽혀지거나 헐어져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경우 새로이 지적도를 작성하는 때 작업하는 품이다.

②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축척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도 1매.

④ 기타사항

· 본 품은 지적도 1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지적도를 재작성할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 의한 지적도 재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합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비고
데이터확인	(0.07)	1	1			(0.07)	(0.07)			( )는 내업임
도면작성	(0.34)		1				(0.34)			
대조수정	(0.10)	1	1			(0.10)	(0.10)			
성과작성	(0.13)		1				(0.13)			
점검	(0.02)	1	1			(0.02)	(0.02)			
성과인계	(0.02)	1	1			(0.02)	(0.02)			
합계	(0.68)					(0.21)	(0.68)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적공부가 더럽혀지거나 헐어져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경우 새로이 지적도를 작성하는 때 작업하는 품이다.

②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내용	토 지	임 야
계수	1.12	1.36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도 1매.

④ 기타사항

· 본 품은 지적도 1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지적도를 재작성할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의한 지적도 재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축척별 개념을 지적공부등록 형태로 전환 →수수료체계 단순화, 국민의 이해증진(시행중)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계상근거 명시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36-3 도면작성	보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등 사	(0.25)		1					(0.25)				( )는 내업임
제 도	(0.34)		1					(0.34)				
대조수정	(0.03)		1					(0.03)				
성과작성	(0.13)		1					(0.13)				
점 검	(0.02)		1					(0.02)				
성과인계	(0.01)		1					(0.01)				
합 계	(0.78)							(0.78)				

[주] ①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②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도면 사본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장을 기준한 것이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등 사	(0.25)		1				(0.25)			( )는 내업임
제 도	(0.34)		1				(0.34)			
대조수정	(0.03)		1				(0.03)			
성과작성	(0.13)		1				(0.13)			
점 검	(0.02)		1				(0.02)			
성과인계	(0.01)		1				(0.01)			
합 계	(0.78)						(0.78)			

[주]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내용	토 지	임 야
계수	1.12	1.36

②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도면 사본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장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축척별 개념을 지적공부등록 형태로 전환 →수수료체계 단순화, 국민의 이해증진(시행중)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계상근거 명시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37-1 지적현황 측량(도해)	보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22)		1					(0.22)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6)	1	1				(0.06)	(0.06)				
등사		(0.12)		1					(0.12)				
준비도	작성	(0.10)			1					(0.10)			
	확인	(0.06)		1					(0.06)				
실지측량		0.52	1		1	1		0.52		0.52	0.52		
성과설명		0.04	1					0.04					
결과도작성		(0.12)		1					(0.12)				
면적측정		(0.04)			1					(0.04)			
성과도및조서작성		(0.04)			1					(0.04)			
점검		(0.04)	1					(0.04)					
성과인계		(0.02)	1					(0.02)					
소계	외업	0.56						0.56		0.52	0.52		
	내업	(0.82)						(0.12)	(0.58)	(0.18)			
합계		1.38						0.68	0.58	0.70	0.52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지적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22)		1				(0.22)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6)	1	1			(0.06)	(0.06)			
등사		(0.12)		1				(0.12)			
준비도	작성	(0.10)		1				(0.10)			
	확인	(0.06)		1				(0.06)			
실지측량		0.52	1	1	1		0.52	0.52	0.52		
성과설명		0.04	1				0.04				
결과도작성		(0.12)		1				(0.12)			
면적측정		(0.04)		1				(0.04)			
성과도및조서작성		(0.04)		1				(0.04)			
점검		(0.04)	1				(0.04)				
성과인계		(0.02)	1				(0.02)				
소계	외업	0.56					0.56	0.52	0.52		
	내업	(0.82)					(0.12)	(0.76)			
합계		1.38					0.68	1.28	0.52		

[주] ① 본 품은 도해지역에서 지적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0**	**1.62**	**1.75**	**1.90**	**2.13**	**2.23**	**1.73+0.1(n)**

·계수 구체적 표현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③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축척별
구분</th><th>1/600</th><th>1/1000, 1/1200, 1/2400</th><th>1/3000</th><th>1/6000</th></tr>
<tr><td>계수</td><td>0.00</td><td>0.23</td><td>0.35</td><td>0.37</td></tr>
</table>
④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0.00</td><td>0.40</td><td>0.54</td></tr>
</table>
⑤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지적현황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내용
구분</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td>
<td>③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토 지</th><th>임 야</th></tr>
<tr><td>계수</td><td>1.12</td><td>1.36</td></tr>
</table>
④ 지역구분계수(기관 등이 신청하는 특수업무에 적용)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1.00</td><td>1.40</td><td>1.54</td></tr>
</table>
* 특수업무란 국가・공공기관 및 법인 등이 측량을 신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⑤ 지가계수(개인이 신청하는 일반업무에 적용)
㉮ 개인이 신청하는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다음의 공시지가 가격대별 계수를 본 품에 곱하여 계상한다. 대상 토지에 대한 적용 공시지가는 당해 연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지가자료를 이용하고, 시점은 지적측량의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자료가 없을 경우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table>
<tr><th>공시지가
내용</th><th>3,000원
이하</th><th>3,001원
~10,000원</th><th>10,001원
~30,000원</th><th>30,001원
~100,000원</th><th>100,001원
~1,000,000원</th><th>1,000,000원
초과</th></tr>
<tr><td>계수</td><td>0.70</td><td>0.85</td><td>1.00</td><td>1.30</td><td>1.50</td><td>1.60</td></tr>
</table>
* 일반업무란 개인이 본인소유의 재산관리 등의 목적으로 측량을 신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⑥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지적현황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내용
구분</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td>
<td>・축척별 개념을 지적공부등록 형태로 전환 →수수료체계 단순화, 국민의 이해증진(시행중)
・지역구분계수 적용기준 구체화 (특수업무)

・토지의 공시지가 계수적용기준도입 (일반업무)</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보완	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 면적계산부 1부 ⑦ 기타사항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경계선이나 면적지정 등으로 추가로 현장측량 할 때마다 기본품에 의한 측량비의 40%의 값을 가산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⑦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 면적계산부 1부 ⑧ 기타사항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면적이나 현황선을 도면상에 지정하여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의 값을 가산한다. 이 경우 추가로 현장측량 할 때마다 가산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지정현황 내용(자구) 수정 · 법원감정 업무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 요청시 수수료 가산 근거 마련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 근거 명시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td>
<td>
[계산예]
① 기준단가
시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현황측량 할 경우
㉠기본계수 : 1.0 ㉡등록계수 : 0.12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75
합계 : 2.27 = (㉠+㉡+㉢+㉣)
<table>
<tr><th>구 분 \ 내 용</th><th>수 량</th><th>단 가</th><th>금 액</th></tr>
<tr><td>지 적 기 사</td><td>0.68×2.27=1.54</td><td>w_1</td><td>W_1=1.54×w_1</td></tr>
<tr><td>지 적 산 업 기 사</td><td>1.28×2.27=2.91</td><td>w_2</td><td>W_2=2.91×w_2</td></tr>
<tr><td>지 적 기 능 사</td><td>0.52×2.27=1.18</td><td>w_3</td><td>W_3=1.18×w_3</td></tr>
<tr><td>계</td><td></td><td></td><td>ΣW</td></tr>
</table>
[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2
② 집단지・연속지
시지역으로서 70필지의 토지를 현황측량 할 경우 (1필지당 단가)
㉠기본계수(50필지까지) : 1.0, ㉡기본계수(100필지까지) : 0.97 ㉢등록계수 : 0.12
㉣지역구분계수 : 0.40 ｜ 합계 : 1.52 = (㉠+㉢+㉣), 1.49 = (㉡+㉢+㉣)
㉮ 기본단가(50필지까지)
<table>
<tr><th>구 분 \ 내 용</th><th>수 량</th><th>단 가</th><th>금 액</th></tr>
<tr><td>지 적 기 사</td><td>0.68×1.52=1.03</td><td>w_1</td><td>W_1=1.03×w_1</td></tr>
<tr><td>지 적 산 업 기 사</td><td>1.28×1.52=1.95</td><td>w_2</td><td>W_2=1.95×w_2</td></tr>
<tr><td>지 적 기 능 사</td><td>0.52×1.52=0.79</td><td>w_3</td><td>W_3=0.79×w_3</td></tr>
<tr><td>계</td><td></td><td></td><td>ΣW</td></tr>
</table>
[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2
</td>
<td>・계산예 보완
-자격종목 통합 및 예시 구체화</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보완		㉯ 체감계수 적용단가 (51필지～100필지까지)	

구분 \ 내용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0.68×1.49=1.01	w_1	$W_1=1.01\times w_1$
지 적 산 업 기 사	1.28×1.49=1.91	w_2	$W_2=1.91\times w_2$
지 적 기 능 사	0.52×1.49=0.77	w_3	$W_3=0.77\times w_3$
계			ΣW

[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2

[합 계] = (단가ⓐ × 50필지) + (단가ⓑ × 20필지)

㉰ 지가계수 적용단가

일반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의 경우 ㎡당 공시지가 2,500원, 축척 1:1,200 토지 1필지의 면적이 7,000㎡이고 2필지로 현황측량 할 경우

㉠기본계수 : 1.0 ㉡등록계수 : 0.12 ㉢면적계수 : 0.75
㉣지가계수 : -0.30 | 합계 : 1.57 = ㉠+㉡+㉢+㉣

구분 \ 내용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0.68×1.57=1.07	w_1	$W_1=1.07\times w_1$
지 적 산 업 기 사	1.28×1.57=2.01	w_2	$W_2=2.01\times w_2$
지 적 기 능 사	0.52×1.57=0.82	w_3	$W_3=0.82\times w_3$
계			ΣW

[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2

[주] 1.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 · 기계경비 · 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 · 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2. 집단지 · 연속지인 경우 50필지까지는 기본단가를, 100필지까지는 체감계수가 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37-2 지적현황 측량(수치)	보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26)		1					(0.26)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7)	1	1				(0.07)	(0.07)				
등사		(0.09)		1					(0.09)				
준비도	작성	(0.11)				1					(0.11)		
	확인	(0.07)		1					(0.07)				
실지측량		0.53	1		1	1		0.53		0.53	0.53		
성과설명		0.06	1					0.06					
결과도작성		(0.19)		1					(0.19)				
면적측정		(0.04)				1					(0.04)		
성과도및조서작성		(0.07)				1					(0.04)		
점검		(0.05)	1					(0.05)					
성과인계		(0.05)	1					(0.05)					
소계	외업	0.59						0.59		0.53	0.53		
	내업	(1.00)						(0.17)	(0.68)		(0.19)		
합계		1.59						0.76	0.68	0.53	0.72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에서 지적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26)		1				(0.26)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7)	1	1			(0.07)	(0.07)			
등사		(0.09)		1				(0.09)			
준비도	작성	(0.11)			1				(0.11)		
	확인	(0.07)		1				(0.07)			
실지측량		0.53	1	1	1		0.53	0.53	0.53		
성과설명		0.06	1				0.06				
결과도작성		(0.19)		1				(0.19)			
면적측정		(0.04)			1				(0.04)		
성과도및조서작성		(0.07)			1				(0.04)		
점검		(0.05)	1				(0.05)				
성과인계		(0.05)	1				(0.05)				
소계	외업	0.59					0.59	0.53	0.53		
	내업	(1.00)					(0.17)	(0.68)	(0.19)		
합계		1.59					0.76	1.21	0.72		

[주] ① 본 품은 수치지역에서 지적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0**	**1.62**	**1.75**	**1.90**	**2.13**	**2.23**	**1.73+0.1(n)**

·계수 구체적 표현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0.00</td><td>0.40</td><td>0.54</td></tr>
</table>
④ 집단지 · 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 · 연속지라 함은 지적현황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내용
구분</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td>
<td>③ 지역구분계수(기관 등이 신청하는 특수업무에 적용)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1.00</td><td>1.40</td><td>1.54</td></tr>
</table>
* 특수업무란 국가 · 공공기관 및 법인 등이 측량을 신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지가계수(개인이 신청하는 일반업무에 적용)
㉮ 개인이 신청하는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다음의 공시지가 가격대별 계수를 본 품에 곱하여 계상한다. 대상 토지에 대한 적용 공시지가는 당해 연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지가자료를 이용하고, 시점은 지적측량의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자료가 없을 경우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table>
<tr><th>공시지가
내용</th><th>3,000원
이하</th><th>3,001원
~10,000원</th><th>10,001원
~30,000원</th><th>30,001원
~100,000원</th><th>100,001원
~1,000,000원</th><th>1,000,000원
초과</th></tr>
<tr><td>계수</td><td>0.70</td><td>0.85</td><td>1.00</td><td>1.30</td><td>1.50</td><td>1.60</td></tr>
</table>
* 일반업무란 개인이 본인소유의 재산관리 등의 목적으로 측량을 신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⑤ 집단지 · 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 · 연속지라 함은 지적현황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분
내용</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td>
<td>· 지역구분계수 적용기준 구체화 (특수업무)
· 계수 구체적 표현
· 토지의 공시지가 계수 적용기준도입 (일반업무)
·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보완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⑥ 기타사항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경계선이나 면적지정 등으로 추가로 현장측량 할 때마다 기본품에 의한 측량비의 40%의 값을 가산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적현황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⑦ 기타사항 · 지적현황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면적이나 현황선을 도면상에 지정하여 현장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 품에 의한 측량비의 40%의 값을 가산한다. 이 경우 추가로 현장측량 할 때마다 가산한다. · 본 품의 측량결과에 대한 설명을 부가한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 품을 가산 적용할 수 있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지정현황 내용(자구) 수정 · 법원감정 업무 감정도 및 감정서 발급 요청시 수수료 가산근거 마련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 근거 명시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td></td><td>보완</td><td></td><td>

[계산예]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시지역의 1필지 면적이 7,000㎡인 토지를 2필지로 현황측량 할 경우

㉠기본계수 : 1.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75
합계 : 2.15 = (㉠+㉡+㉢)

<table>
<tr><th>구 분 \ 내 용</th><th>수 량</th><th>단 가</th><th>금 액</th></tr>
<tr><td>지 적 기 사</td><td>0.76×2.15=1.63</td><td>w_1</td><td>$W_1=1.63\times w_1$</td></tr>
<tr><td>지 적 산 업 기 사</td><td>1.21×2.15=2.60</td><td>w_2</td><td>$W_2=2.60\times w_2$</td></tr>
<tr><td>지 적 기 능 사</td><td>0.72×2.15=1.55</td><td>w_3</td><td>$W_3=1.55\times w_3$</td></tr>
<tr><td>계</td><td></td><td></td><td>ΣW</td></tr>
</table>

[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2

② 집단지 · 연속지

수치지역인 시지역의 70필지 토지를 현황측량 할 경우 (1필지당 단가)

㉠기본계수(50필지까지) : 1.0, ㉡기본계수(100필지까지) : 0.97 ㉢지역구분계수 : 0.40 | 합계 : 1.40 = (㉠+㉢), 1.37 = (㉡+㉢)

㉮ 기본단가(50필지까지)

<table>
<tr><th>구 분 \ 내 용</th><th>수 량</th><th>단 가</th><th>금 액</th></tr>
<tr><td>지 적 기 사</td><td>0.76×1.40=1.06</td><td>w_1</td><td>$W_1=1.06\times w_1$</td></tr>
<tr><td>지 적 산 업 기 사</td><td>1.21×1.40=1.69</td><td>w_2</td><td>$W_2=1.69\times w_2$</td></tr>
<tr><td>지 적 기 능 사</td><td>0.72×1.40=1.01</td><td>w_3</td><td>$W_3=1.01\times w_3$</td></tr>
<tr><td>계</td><td></td><td></td><td>ΣW</td></tr>
</table>

[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2

</td><td>· 계산예 보완
-자격종목 통합 및 예시 구체화</td></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보완		㉯ 체감계수 적용단가 (51필지～100필지까지)	

구분 \ 내용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0.76×1.37=1.04	w_1	$W_1=1.04\times w_1$
지 적 산 업 기 사	1.21×1.37=1.66	w_2	$W_2=1.66\times w_2$
지 적 기 능 사	0.72×1.37=0.99	w_3	$W_3=0.99\times w_3$
계			ΣW

[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2

[합 계] = (단가ⓐ × 50필지) + (단가ⓑ × 20필지)

㉰ 지가계수 적용단가

일반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의 경우 수치지역으로 ㎡당 공시지가 2,500원, 토지 1필지의 면적이 7,000㎡이고 2필지로 현황측량 할 경우

㉠기본계수 : 1.0 ㉡면적계수 : 0.75 ㉢지가계수 : -0.30
합계 : 1.45 = ㉠+㉡+㉢

구분 \ 내용	수 량	단 가	금 액
지 적 기 사	0.76×1.45=1.10	w_1	$W_1=1.10\times w_1$
지 적 산 업 기 사	1.21×1.45=1.75	w_2	$W_2=1.75\times w_2$
지 적 기 능 사	0.72×1.45=1.04	w_3	$W_3=1.04\times w_3$
계			ΣW

[결정단가]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 2

[주] 1. 측량비 산출단가에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2. 집단지・연속지인 경우 50필지까지는 기본단가를, 100필지까지는 체감계수가 적용된 단가로 측량비를 산출하여 전체 합산한다.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38-1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측량(지구계점)	보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합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비고
자료조사		(3.33)	1	1	1			(3.33)	(3.33)	(3.33)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93)	1	1				(0.93)	(0.93)				
현장조사		0.70	1	1	1			0.70	0.70	0.70			
등사		(2.33)	1	1	1			(2.33)	(2.33)	(2.33)			
준비도	작성	(2.95)	1	1	1			(2.95)	(2.95)	(2.95)			
	확인	(0.82)	1					(0.82)					
지구계 측량		14.63	1	1	1	1		14.63	14.63	14.63	14.63		
예정면적산출		(1.45)	1	1	1			(1.45)	(1.45)	(1.45)			
예정결과도작성		(3.89)	1	1	1			(3.89)	(3.89)	(3.89)			
성과작성		(9.87)	1	1	1			(9.87)	(9.87)	(9.87)			
점검		(0.96)	1					(0.96)					
성과인계		(1.19)	1					(1.19)					
소계	외업	15.33						15.33	15.33	15.33	14.63		
	내업	(27.72)						(27.72)	(24.75)	(23.82)			
합계		43.05						43.05	40.08	39.15	14.63		

[주] ① <u>본 품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계점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의 측량 품이다.</u>

② 면적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u>200,000㎡</u>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u>200,000㎡</u>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하며,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 내용	<u>20만㎡ 이하</u>	<u>20만㎡ - 50만㎡</u>	50만㎡ - -100만㎡	100만㎡- 200만㎡	200만㎡ - 300만㎡	<u>300만㎡ 이상</u>
계수	1.0	0.9	0.8	0.7	0.6	0.5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합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비고
자료조사		(3.33)	1	2			(3.33)	(6.66)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93)	1	1			(0.93)	(0.93)			
현장조사		0.70	1	2			0.70	1.40			
등사		(2.33)	1	2			(2.33)	(4.66)			
준비도	작성	(2.95)	1	2			(2.95)	(5.90)			
	확인	(0.82)	1				(0.82)				
지구계 측량		14.63	1	2	1		14.63	29.26	14.63		
예정면적산출		(1.45)	1	2			(1.45)	(2.90)			
예정결과도작성		(3.89)	1	2			(3.89)	(7.78)			
성과작성		(9.87)	1	2			(9.87)	(19.74)			
점검		(0.96)	1				(0.96)				
성과인계		(1.19)	1				(1.19)				
소계	외업	15.33					15.33	30.66	14.63		
	내업	(27.72)					(27.72)	(48.57)			
합계		43.05					43.05	79.23	14.63		

[주] ① <u>본 품은 지적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공업단지 등)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u>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계점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의 측량 품이다.

② 면적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u>100,000㎡</u>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u>100,000㎡</u>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하며,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 내용	<u>10만㎡ 이하</u>	<u>10만㎡초과 ~ 50만㎡</u>	<u>50만㎡초과 ~100만㎡</u>	<u>100만㎡초과 ~200만㎡</u>	<u>200만㎡초과 ~300만㎡</u>	<u>300만㎡ 초과</u>
계수	1.0	0.9	0.8	0.7	0.6	0.5

비고:
- ·법령조문 및 관계법령 명시
- ·면적계수 등급 세분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면적계수와 균형 유지)
- ·범위구체화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예정지적좌표계산부 1부 ⓑ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1부 ⓒ 지구계 예정도(1/500 또는 1/1000) 1부 ⓓ 지구계 예정종합도 1부 ※ 본 품에 없는 성과작성 요구시 별도의 품을 가산한다. ④ 기타사항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측량지구면적이 50,000㎡이하인 경우에는 50,000㎡의 해당하는 측량비를 적용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 등의 측량기계는 토탈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관측 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는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지구계점 측량업무 이외의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예정지적좌표계산부 1부 ⓑ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1부 ⓒ 지구계 예정도(1/500 또는 1/1000) 1부 ⓓ 지구계 예정종합도 1부 ※ 본 품에 없는 성과작성 요구시 별도의 품을 가산한다. ④ 기타사항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측량지구면적이 50,000㎡이하인 경우에는 50,000㎡의 해당하는 측량비를 적용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 등의 측량기계는 토탈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관측 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에는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지구계점 측량업무 이외의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 근거 명시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38-2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 측량(전체지구)	보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5.33)	1	1	1			(5.33)	(5.33)	(5.33)			( )는 내업임
계획준비		(1.68)	1	1				(1.68)	(1.68)				
현장조사		2.19	1	1	1			2.19	2.19	2.19			
등사		(3.31)	1	1	1			(3.31)	(3.31)	(3.31)			
준비도	작성	(5.26)	1	1	1			(5.26)	(5.26)	(5.26)			
	확인	(0.62)	1					(0.62)					
지구계 측량		20.83	1	1	1	1		20.83	20.83	20.83	20.83		
중심점 측량	계산	(31.04)	1	1	1			(31.04)	(31.04)	(31.04)			
	말박기	10.77	1	1	1	1		10.77	10.77	10.77	10.77		
가구점 측량	계산	(23.85)	1	1	1			(23.85)	(23.85)	(23.85)			
	말박기	9.62	1	1	1	1		9.62	9.62	9.62	9.62		
필계점 측량	계산	(19.36)	1	1	1			(19.36)	(19.36)	(19.36)			
	말박기	8.08	1	1	1	1		8.08	8.08	8.08	8.08		
예정면적산출		(10.21)	1	1	1			(10.21)	(10.21)	(10.21)			
예정결과도작성		(12.03)	1	1	1			(12.03)	(12.03)	(12.03)			
성과작성		(32.43)	1	1	1			(32.43)	(32.43)	(32.43)			
점검		(3.59)	1					(3.59)					
성과인계		(2.03)	1					(2.03)					
소계	외업	51.49						51.49	51.49	51.49	49.30		
	내업	(150.74)						(150.74)	(144.50)	(142.82)			
합계		202.23						202.23	195.99	194.31	49.30		

[주] ① **본 품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전체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의 측량 품이다.**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5.33)	1	2			(5.33)	(10.66)			( )는 내업임
계획준비		(1.68)	1	1			(1.68)	(1.68)			
현장조사		2.19	1	2			2.19	4.38			
등사		(3.31)	1	2			(3.31)	(6.62)			
준비도	작성	(5.26)	1	2			(5.26)	(10.52)			
	확인	(0.62)	1				(0.62)				
지구계 측량		20.83	1	2	1		20.83	41.66	20.83		
중심점 측량	계산	(31.04)	1	2			(31.04)	(62.08)			
	말박기	10.77	1	2	1		10.77	21.54	10.77		
가구점 측량	계산	(23.85)	1	2			(23.85)	(47.70)			
	말박기	9.62	1	2	1		9.62	19.24	9.62		
필계점 측량	계산	(19.36)	1	2			(19.36)	(38.72)			
	말박기	8.08	1	2	1		8.08	16.16	8.08		
예정면적산출		(10.21)	1	2			(10.21)	(20.42)			
예정결과도작성		(12.03)	1	2			(12.03)	(24.06)			
성과작성		(32.43)	1	2			(32.43)	(64.86)			
점검		(3.59)	1				(3.59)				
성과인계		(2.03)	1				(2.03)				
소계	외업	51.49					51.49	102.98	49.30		
	내업	(150.74)					(150.74)	(287.32)			
합계		202.23					202.23	390.30	49.30		

[주] ① **본 품은 지적법 제26조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공업단지 등)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전체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업무의 측량 품이다.

·법령조문 및 관계법령 명시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② 면적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u>200,000㎡</u>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u>200,000㎡</u>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하며,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table>
<tr><th>구분
내용</th><th><u>20만㎡ 이하</u></th><th><u>20만㎡ - 50만㎡</u></th><th>50만㎡ - 100만㎡</th><th>100만㎡ - 200만㎡</th><th>200만㎡ - 300만㎡</th><th><u>300만㎡ 이상</u></th></tr>
<tr><td>계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d>0.5</td></tr>
</table>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예정지적좌표계산부 1부
ⓑ 지구계 예정지적좌표도(1/500 또는 1/1000) 1부
ⓒ 중심점, 가구점, 필계점 예정좌표계산부 각1부
ⓓ 지구, 가구, 필지별 예정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각1부
ⓔ 예정지적좌표도(1/500 또는 1/1000) 1부
ⓕ 예정종합도(폴리에스테필름) 1부
※ 본 품에 없는 성과작성 요구시 별도의 품을 가산한다.
④ 기타사항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측량지구면적이 50,000㎡이하인 경우에는 50,000㎡의 해당하는 측량비를 적용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 등의 측량기계는 토탈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관측 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 본 품에는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지구계점, 중심점, 가구점, 필계점측량업무 이외의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중심점, 가구점, 필계점에 대한 계산과 말박기측량을 구분하여 품을 적용할 수 있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td>
<td>② 면적계수
본 품의 기준면적은 1지구 <u>100,000㎡</u>를 기준한 것으로 측량지구면적이 <u>100,000㎡</u>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하며, 작업과정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table>
<tr><th>구분
내용</th><th><u>10만㎡ 이하</u></th><th><u>10만㎡초과 ~50만㎡</u></th><th>50만㎡<u>초과 ~</u>100만㎡</th><th>100만㎡<u>초과 ~</u>200만㎡</th><th>200만㎡<u>초과 ~</u>300만㎡</th><th><u>300만㎡ 초과</u></th></tr>
<tr><td>계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6</td><td>0.5</td></tr>
</table>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지구계점 예정지적좌표계산부 1부
ⓑ 지구계 예정지적좌표도(1/500 또는 1/1000) 1부
ⓒ 중심점, 가구점, 필계점 예정좌표계산부 각1부
ⓓ 지구, 가구, 필지별 예정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각1부
ⓔ 예정지적좌표도(1/500 또는 1/1000) 1부
ⓕ 예정종합도(폴리에스테필름) 1부
※ 본 품에 없는 성과작성 요구시 별도의 품을 가산한다.
④ 기타사항
·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한다.
· 측량지구면적이 50,000㎡이하인 경우에는 50,000㎡의 해당하는 측량비를 적용한다.
· 본 품에 의한 면적계산은 좌표를 면적프로그램에 의하여 컴퓨터로 계산한 품으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좌표점 전개는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전개하였다.
· 본 품에 의한 거리측정 등의 측량기계는 토탈스테이션, 광파측거기, 각관측 장비로 한다.
· 본 품에 의한 결과도 작성은 자동제도기에 의한 것이다.
· 본 품에는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지구계점, 중심점, 가구점, 필계점측량업무 이외의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중심점, 가구점, 필계점에 대한 계산과 말박기측량을 구분하여 품을 적용할 수 있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u>·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u>
<u>·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u></td>
<td>· 면적계수 등급 세분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면적계수와 균형 유지)
· 범위 구체화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 근거 명시</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39-1 자동제도(좌표독취)	보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04)		1					(0.04)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3)	1	1				(0.03)	(0.03)				
좌표독취	(0.37)		1					(0.37)				
도면작성편집	(0.15)		1					(0.15)				
대조수정	(0.09)	1					(0.09)					
성과작성	(0.06)		1					(0.06)				
점검	(0.07)	1					(0.07)					
성과인계	(0.02)	1					(0.02)					
합계	(0.83)						(0.21)	(0.65)				

[주] ①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② 성과품

·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좌표를 독취하여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04)		1				(0.04)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3)	1	1			(0.03)	(0.03)			
좌표독취	(0.37)		1				(0.37)			
도면작성편집	(0.15)		1				(0.15)			
대조수정	(0.09)	1				(0.09)				
성과작성	(0.06)		1				(0.06)			
점검	(0.07)	1				(0.07)				
성과인계	(0.02)	1				(0.02)				
합계	(0.83)					(0.21)	(0.65)			

[주]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내용	토 지	임 야
계수	1.12	1.36

② 성과품

·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좌표를 독취하여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에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축척별 개념을 지적공부등록 형태로 전환 →수수료체계 단순화, 국민의 이해증진(시행중)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계상근거 명시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39-2 자동제도(좌표입력)	보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05)		1					(0.05)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3)	1	1				(0.03)	(0.03)				
좌표입력	(0.31)		1					(0.31)				
도면작성	(0.19)		1					(0.19)				
대조수정	(0.07)	1					(0.07)					
성과작성	(0.05)		1					(0.05)				
점검	(0.03)	1					(0.03)					
성과인계	(0.01)	1					(0.01)					
합계	(0.74)						0.14)	(0.63)				

[주] ①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축척별 /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② 성과품

·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좌표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05)		1				(0.05)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3)	1	1			(0.03)	(0.03)			
좌표입력	(0.31)		1				(0.31)			
도면작성	(0.19)		1				(0.19)			
대조수정	(0.07)	1				(0.07)				
성과작성	(0.05)		1				(0.05)			
점검	(0.03)	1				(0.03)				
성과인계	(0.01)	1				(0.01)				
합계	(0.74)					0.14)	(0.63)			

[주]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구분 / 내용	토 지	임 야
계수	1.12	1.36

② 성과품

·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좌표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축척별 개념을 지적공부등록 형태로 전환 →수수료체계 단순화, 국민의 이해증진(시행중)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계상근거 명시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39-3 자동제도(파일제공)	보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05)		1					(0.05)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4)	1	1				(0.04)	(0.04)				
데이터 편집	(0.09)		1					(0.09)				
도면작성	(0.06)		1					(0.06)				
대조수정	(0.08)	1					(0.08)					
성과작성	(0.07)		1					(0.07)				
점검	(0.03)	1					(0.03)					
성과인계	(0.03)	1						(0.03)				
합계	(0.45)						(0.15)	(0.34)				

[주] ①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축척별 /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② 성과품

·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좌표파일을 제공받아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05)		1				(0.05)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4)	1	1			(0.04)	(0.04)			
데이터 편집	(0.09)		1				(0.09)			
도면작성	(0.06)		1				(0.06)			
대조수정	(0.08)	1				(0.08)				
성과작성	(0.07)		1				(0.07)			
점검	(0.03)	1				(0.03)				
성과인계	(0.03)	1					(0.03)			
합계	(0.45)					(0.15)	(0.34)			

[주]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구분 / 내용	토지	임야
계수	1.12	1.36

② 성과품

· 자동제도기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좌표파일을 제공받아 자동제도기에 의해 도면작성 한 것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특수한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시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의 50%의 값을 적용한다.

·축척별 개념을 지적공부등록형태로 전환→수수료체계 단순화, 국민의 이해증진(시행중)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계상근거 명시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40 도시계획선(인선)	보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 료 조 사	(0.09)		1					(0.09)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3)	1	1				(0.03)	(0.03)				
등 사	(0.13)		1					(0.13)				
도시계획선인선	(0.11)		1					(0.11)				
대 조 수 정	(0.07)	1					(0.07)					
점 검	(0.04)	1					(0.04)					
성 과 인 계	(0.03)	1					(0.03)					
합 계	(0.50)						(0.17)	(0.36)				

[주] ①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 구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②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방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선을 도면에 인선한 품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 료 조 사	(0.09)		1				(0.09)			( )는 내업임
계 획 준 비	(0.03)	1	1			(0.03)	(0.03)			
등 사	(0.13)		1				(0.13)			
도시계획선인선	(0.11)		1				(0.11)			
대 조 수 정	(0.07)	1				(0.07)				
점 검	(0.04)	1				(0.04)				
성 과 인 계	(0.03)	1				(0.03)				
합 계	(0.50)					(0.17)	(0.36)			

[주] ①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내용	토 지	임 야
계수	1.12	1.36

② 기타사항

· 본 품은 도시계획선을 도면에 인선한 품이다.

· 본 품은 지적도 크기의 1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축척별 개념을 지적공부등록 형태로 전환 →수수료체계 단순화, 국민의 이해증진(시행중)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계상근거 명시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41-1 축척변경 측량(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	보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41)		1					(0.41)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8)	1	1				(0.08)	(0.08)				
현장조사		0.26	1	1				0.26	0.26				
등사		(0.06)		1					(0.06)				
준비도	작성	(0.08)		1	1				(0.08)	(0.08)			
	확인	(0.02)	1					(0.02)					
신도축도		(0.03)			1					(0.03)			
실지측량		0.43	1	1	1			0.43	0.43	0.43			
경계점 결정		(0.35)	1	1				(0.35)	(0.35)				
결과도 작성		(0.04)		1	1				(0.04)	(0.04)			
성과작성		(0.13)		1	1				(0.13)	(0.13)			
점검		(0.01)	1					(0.01)					
성과인계		(0.02)	1					(0.02)					
소계	외업	0.69						0.69	0.69	0.43			
	내업	(1.23)						(0.48)	(1.15)	(0.28)			
합계		1.92						1.17	1.84	0.71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41)		1				(0.41)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8)	1	1			(0.08)	(0.08)			
현장조사		0.26	1	1			0.26	0.26			
등사		(0.06)		1				(0.06)			
준비도	작성	(0.08)		2				(0.16)			
	확인	(0.02)	1				(0.02)				
신도축도		(0.03)		1				(0.03)			
실지측량		0.43	1	2			0.43	0.86			
경계점 결정		(0.35)	1	1			(0.35)	(0.35)			
결과도 작성		(0.04)		2				(0.08)			
성과작성		(0.13)		2				(0.26)			
점검		(0.01)	1				(0.01)				
성과인계		(0.02)	1				(0.02)				
소계	외업	0.69					0.69	1.12			
	내업	(1.23)					(0.48)	(1.43)			
합계		1.92					1.17	2.55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0**	**1.62**	**1.75**	**1.90**	**2.13**	**2.23**	**1.73+0.1(n)**

·계수 구체적 표현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② <u>축척계수</u>
<u>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u>
<table>
<tr><th>축척별
구분</th><th>1/600</th><th>1/1000, 1/1200, 1/2400</th><th>1/3000</th><th>1/6000</th></tr>
<tr><td>계수</td><td>0.00</td><td>0.23</td><td>0.35</td><td>0.37</td></tr>
</table>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0.00</td><td>0.40</td><td>0.54</td></tr>
</table>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축척변경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내용
구분</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축척변경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⑥ 기타사항
・본 품은 도해측량방법에 의하여 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 축척변경 할 경우에 수반되는 측량 품이다.
・축척변경 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td>
<td>② <u>등록계수</u>
<u>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u>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토 지</th><th>임 야</th></tr>
<tr><td>계수</td><td>1.12</td><td>1.36</td></tr>
</table>
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1.00</td><td>1.40</td><td>1.54</td></tr>
</table>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축척변경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분
내용</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축척변경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⑥ 기타사항
・본 품은 도해측량방법에 의하여 도해지역에서 도해지역으로 축척변경 할 경우에 수반되는 측량 품이다.
・축척변경 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로 구분한다.
<u>・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u>
<u>・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u>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td>
<td>・축척별 개념을 지적공부등록 형태로 전환 →수수료체계 단순화, 국민의 이해증진(시행중)

・계수 구체적 표현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근거 명시</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41-2 축척변경 측량(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	보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 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합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비고
자료조사		(0.04)		1					(0.04)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1)	1	1				(0.01)	(0.01)				
현장조사		0.22	1	1				0.22	0.22				
등사		(0.01)		1					(0.01)				
현지측량		0.56	1	1	1	1		0.56	0.56	0.56	0.56		
좌표계산		(0.19)		1					(0.19)				
좌표전개		(0.02)			1					(0.02)			
경계점조정		(1.08)	1	1				(1.08)	(1.08)				
면적계산		(0.20)		1	1				(0.20)	(0.20)			
결과도작성		(0.04)		1	1				(0.11)	(0.11)			
성과작성		(0.05)		1	1				(0.08)	(0.08)			
점검		(0.01)	1					(0.01)					
성과인계		(0.02)	1					(0.02)					
소계	외업	0.78						0.78	0.78	0.56	0.56		
	내업	(1.67)						(1.12)	(1.72)	(0.41)			
합계		2.45						1.90	2.50	0.97	0.56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합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비고
자료조사		(0.04)		1				(0.04)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1)	1	1			(0.01)	(0.01)			
현장조사		0.22	1	1			0.22	0.22			
등사		(0.01)		1				(0.01)			
현지측량		0.56	1	2	1		0.56	1.12	0.56		
좌표계산		(0.19)		1				(0.19)			
좌표전개		(0.02)		1				(0.02)			
경계점조정		(1.08)	1	1			(1.08)	(1.08)			
면적계산		(0.20)		2				(0.40)			
결과도작성		(0.04)		2				(0.22)			
성과작성		(0.05)		2				(0.16)			
점검		(0.01)	1				(0.01)				
성과인계		(0.02)	1				(0.02)				
소계	외업	0.78					0.78	1.34	0.56		
	내업	(1.67)					(1.12)	(2.13)			
합계		2.45					1.90	3.47	0.56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0**	**1.62**	**1.75**	**1.90**	**2.13**	**2.23**	**1.73+0.1(n)**

·계수 구체적 표현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②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0.00</td><td>0.40</td><td>0.54</td></tr>
</table>
③ 집단지 · 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 · 연속지라 함은 축척변경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내용
구분</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축척변경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⑤ 기타사항
· 본 품은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 축척변경 할 경우에 수반되는 측량 품이다.
· 축척변경 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td>
<td>②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u>1.00</u></td><td><u>1.40</u></td><td><u>1.54</u></td></tr>
</table>
③ 집단지 · 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 · 연속지라 함은 축척변경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분
내용</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축척변경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⑤ 기타사항
· 본 품은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도해지역에서 수치지역으로 축척변경 할 경우에 수반되는 측량 품이다.
· 축척변경 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u>·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u>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u>·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u></td>
<td>· 계수 구체적 표현

·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근거 명시</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42-1 시설편입지 면적측정(도해)	보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20)		1					(0.20)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4)	1	1				(0.04)	(0.04)				
등사	(0.10)		1					(0.10)				
준비도 작성	(0.10)			1					(0.10)			
준비도 확인	(0.06)		1					(0.06)				
결과도 작성	(0.10)		1					(0.10)				
면적측정	(0.04)			1					(0.04)			
성과도및조서작성	(0.04)			1					(0.04)			
점검	(0.05)	1					(0.05)					
성과인계	(0.05)	1					(0.05)					
합계	(0.78)						(0.14)	(0.50)	(0.18)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②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축척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20)		1				(0.20)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4)	1	1			(0.04)	(0.04)			
등사	(0.10)		1				(0.10)			
준비도 작성	(0.10)		1				(0.10)			
준비도 확인	(0.06)		1				(0.06)			
결과도 작성	(0.10)		1				(0.10)			
면적측정	(0.04)		1				(0.04)			
성과도및조서작성	(0.04)		1				(0.04)			
점검	(0.05)	1				(0.05)				
성과인계	(0.05)	1				(0.05)				
합계	(0.78)					(0.14)	(0.68)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0**	**1.62**	**1.75**	**1.90**	**2.13**	**2.23**	**1.73+0.1(n)**

②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 구분	토 지	임 야
계수	**1.12**	**1.36**

·계수 구체적 표현

·축척별 개념을 지적공부등록 형태로 전환 →수수료체계 단순화, 국민의 이해증진(시행중)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③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시설편입지의 면적측정할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내용
구분</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시설편입지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면적조서 3부
㉲ 성과도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지역에 대하여 작업한 품이다.
· 시설편입지의 면적측정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td>
<td>③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시설편입지의 면적측정할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분
내용</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시설편입지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면적조서 3부
㉲ 성과도 1부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지역에 대하여 작업한 품이다.
· 시설편입지의 면적측정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u>·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u></td>
<td>·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계상근거 명시</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42-2 시설편입지 면적측정(수치)	보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22)		1					(0.22)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6)	1	1				(0.06)	(0.06)				
등사		(0.08)		1					(0.08)				
준비도	작성	(0.10)			1					(0.10)			
	확인	(0.06)		1					(0.06)				
결과도 작성		(0.16)		1					(0.16)				
면적측정		(0.06)			1					(0.060)			
성과도및조서작성		(0.06)			1					(0.06)			
점검		(0.06)	1					(0.06)					
성과인계		(0.06)	1					(0.06)					
합계		(0.92)						(0.18)	0.16	(0.12)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②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시설편입지의 면적측정할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22)		1				(0.22)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6)	1	1			(0.06)	(0.06)			
등사		(0.08)		1				(0.08)			
준비도	작성	(0.10)		1				(0.10)			
	확인	(0.06)		1				(0.06)			
결과도 작성		(0.16)		1				(0.16)			
면적측정		(0.06)		1				(0.06)			
성과도및조서작성		(0.06)		1				(0.06)			
점검		(0.06)	1				(0.06)				
성과인계		(0.06)	1				(0.06)				
합계		(0.92)					(0.18)	(0.80)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0**	**1.62**	**1.75**	**1.90**	**2.13**	**2.23**	**1.73+0.1(n)**

·계수 구체적 표현

②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시설편입지의 면적측정할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내용	50필지이하	51~100필지	101~500필지	501~1000필지	1000필지초과
계수	1.00	0.97	0.91	0.84	0.76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시설편입지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면적조서 3부 ㉲ 성과도 1부 ④ 기타사항 · 본 품은 수치지역에 대하여 작업한 품이다. · 시설편입지의 면적측정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③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시설편입지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면적조서 3부 ㉲ 성과도 1부 ④ 기타사항 · 본 품은 수치지역에 대하여 작업한 품이다. · 시설편입지의 면적측정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계상근거 명시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43-1 도시계획선명시 측량(도해)	보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합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비고
자료조사		(0.24)		1					(0.24)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6)	1	1				(0.06)	(0.06)				
등사		(0.11)		1					(0.11)				
준비도	작성	(0.10)			1					(0.10)			
	확인	(0.08)		1					(0.08)				
실지측량		0.53	1		1	1		0.53		0.53	0.53		
성과설명		0.06	1					0.06					
결과도작성		(0.09)		1					(0.09)				
성과도및조서작성		(0.05)			1					(0.05)			
점검		(0.04)	1					(0.04)					
성과인계		(0.06)	1					(0.06)					
소계	외업	0.59						0.59		0.53	0.53		
	내업	(0.83)						(0.16)	(0.58)	(0.15)			
합계		1.42						0.75	0.58	0.68	0.53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②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축척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합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비고
자료조사		(0.24)		1				(0.24)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6)	1	1			(0.06)	(0.06)			
등사		(0.11)		1				(0.11)			
준비도	작성	(0.10)		1				(0.10)			
	확인	(0.08)		1				(0.08)			
실지측량		0.53	1	1	1		0.53	0.53	0.53		
성과설명		0.06	1				0.06				
결과도작성		(0.09)		1				(0.09)			
성과도및조서작성		(0.05)		1				(0.05)			
점검		(0.04)	1				(0.04)				
성과인계		(0.06)	1				(0.06)				
소계	외업	0.59					0.59	0.53	0.53		
	내업	(0.83)					(0.16)	(0.73)			
합계		1.42					0.75	1.26	0.53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0**	**1.62**	**1.75**	**1.90**	**2.13**	**2.23**	**1.73+0.1(n)**

②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 구분	토 지	임 야
계수	**1.12**	**1.36**

·계수 구체적 표현

·축척별 개념을 지적공부등록 형태로 전환 →수수료체계 단순화, 국민의 이해증진(시행중)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0.00</td><td>0.40</td><td>0.54</td></tr>
</table>
④ 집단지 · 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 · 연속지라 함은 도시계획명시측량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내용
구분</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td>
<td>③ 지역구분계수(기관 등이 신청하는 특수업무에 적용)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1.00</td><td>1.40</td><td>1.54</td></tr>
</table>
* 특수업무란 국가 · 공공기관 및 법인 등이 측량을 신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지가계수(개인이 신청하는 일반업무에 적용)
㉮ 개인이 신청하는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다음의 공시지가 가격대별 계수를 본 품에 곱하여 계상한다. 대상 토지에 대한 적용 공시지가는 당해 연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지가자료를 이용하고, 시점은 지적측량의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자료가 없을 경우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table>
<tr><th>공시지가
내용</th><th>3,000원
이하</th><th>3,001원
~10,000원</th><th>10,001원
~30,000원</th><th>30,001원
~100,000원</th><th>100,001원
~1,000,000원</th><th>1,000,000원
초과</th></tr>
<tr><td>계수</td><td>0.70</td><td>0.85</td><td>1.00</td><td>1.30</td><td>1.50</td><td>1.60</td></tr>
</table>
* 일반업무란 개인이 본인소유의 재산관리 등의 목적으로 측량을 신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⑤ 집단지 · 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 · 연속지라 함은 도시계획명시측량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분
내용</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td>
<td>· 지역구분계수 적용기준 구체화 (특수업무)

· 계수 구체적 표현

· 토지의 공시지가 계수 적용기준 도입 (일반업무)

· 내용의 구체화 자구수정</td>
</tr>
</table>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⑤ 측점계수
본 품은 5점의 도시계획 명시점을 복원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복원한 도시계획 명시점의 수가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내용
구분</th><th>5점이하</th><th>6점-10점</th><th>11점-15점</th><th>16점-20점</th><th>21점-25점</th><th>26점-30점</th><th>30점초과시
매5점마다</th></tr>
<tr><td>계수</td><td>0.00</td><td>0.05</td><td>0.10</td><td>0.15</td><td>0.20</td><td>0.25</td><td>0.05×n</td></tr>
</table>
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도시계획선명시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⑦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지역의 도시계획 명시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 도시계획 명시측량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1필지의 면적은 도시계획선에 의하여 구획된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td>
<td>⑥ 측점계수
본 품은 5점의 도시계획 명시점을 복원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복원한 도시계획 명시점의 수가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분
내용</th><th>5점이하</th><th>6점~10점</th><th>11점~15점</th><th>16점~20점</th><th>21점~25점</th><th>26점~30점</th><th>30점초과시
매5점마다</th></tr>
<tr><td>계수</td><td>1.00</td><td>1.05</td><td>1.10</td><td>1.15</td><td>1.20</td><td>1.25</td><td>1.05×n</td></tr>
</table>
⑦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도시계획선명시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⑧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지역의 도시계획 명시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 도시계획 명시측량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1필지의 면적은 도시계획선에 의하여 구획된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td>
<td>·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및 계수보완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 근거 명시</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보완		[계산예] ① 기준단가 시지역으로서 1필지의 면적이 1,500㎡인 토지를 도시계획선명시측량 할 경우 ㉠기본계수 : 1.0 ㉡등록계수 : 0.12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75 합계 : 2.27 = (㉠+㉡+㉢+㉣) 구분 / 내용 — 수량 — 단가 — 금액 지적기사 — 0.75×2.27=1.70 — w_1 — $W_1=1.70\times w_1$ 지적산업기사 — 1.26×2.27=2.86 — w_2 — $W_2=2.86\times w_2$ 지적기능사 — 0.53×2.27=1.20 — w_3 — $W_3=1.20\times w_3$ 계 — — — ΣW [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② 지가계수 적용단가 일반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의 경우 ㎡당 공시지가 2,500원, 축척 1:1,1200 토지 1필지 1,000㎡의 토지를 복원점 6점으로 복원하는 도시계획선명시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기본계수 : 1.0 ㉡등록계수 : 0.12 ㉢면적계수 : 0.62 ㉣측점계수 : 0.05 ㉤지가계수 : -0.30 | 합계 : 1.49 = ㉠+㉡+㉢+㉣+㉤ 구분 / 내용 — 수량 — 단가 — 금액 지적기사 — 0.75×1.49=1.12 — w_1 — $W_1=1.12\times w_1$ 지적산업기사 — 1.26×1.49=1.88 — w_2 — $W_2=1.88\times w_2$ 지적기능사 — 0.53×1.49=0.79 — w_3 — $W_3=0.79\times w_3$ 계 — — — ΣW [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주]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기계경비・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계산예 보완 -자격종목 통합 및 예시 구체화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43-2 도시계획선명시 측량(수치)	보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25)		1					(0.25)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6)	1	1				(0.06)	(0.06)				
등사		(0.07)		1					(0.07)				
준비도	작성	(0.10)			1					(0.10)			
	확인	(0.06)		1					(0.06)				
실지측량		0.78	1		1	1		0.78		0.78	0.78		
성과설명		0.06	1					0.06					
결과도작성		(0.14)		1					(0.14)				
성과도및조서작성		(0.05)			1					(0.05)			
점검		(0.06)	1					(0.06)					
성과인계		(0.06)	1					(0.06)					
소계	외업	0.84						0.84		0.78	0.78		
	내업	(0.85)						(0.18)	(0.58)	(0.15)			
합계		1.69						1.02	0.58	0.93	0.78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②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25)		1				(0.25)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6)	1	1			(0.06)	(0.06)			
등사		(0.07)		1				(0.07)			
준비도	작성	(0.10)		1				(0.10)			
	확인	(0.06)		1				(0.06)			
실지측량		0.78	1	1	1		0.78	0.78	0.78		
성과설명		0.06	1				0.06				
결과도작성		(0.14)		1				(0.14)			
성과도및조서작성		(0.05)		1				(0.05)			
점검		(0.06)	1				(0.06)				
성과인계		(0.06)	1				(0.06)				
소계	외업	0.84					0.84	0.78	0.78		
	내업	(0.85)					(0.18)	0.73			
합계		1.69					1.02	1.51	0.78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500㎡, 임야는 5,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0	1.62	1.75	1.90	2.13	2.23	1.73+0.1(n)

② 지역구분계수(기관 등이 신청하는 특수업무에 적용)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구분 / 내용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 특수업무란 국가·공공기관 및 법인 등이 측량을 신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계수 구체적 표현

·지역구분계수 적용기준 구체화(특수업무) →지가계수 미적용 측량종목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td>
<td>③ 집단지 · 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 · 연속지라 함은 도시계획명시측량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내용
구분</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④ 측점계수
본 품은 5점의 도시계획 명시점을 복원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복원한 도시계획 명시점의 수가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내용
구분</th><th>5점이하</th><th>6점-10점</th><th>11점-15점</th><th>16점-20점</th><th>21점-25점</th><th>26점-30점</th><th>30점초과시 매5점마다</th></tr>
<tr><td>계수</td><td>0.00</td><td>0.05</td><td>0.10</td><td>0.15</td><td>0.20</td><td>0.25</td><td>0.05×n</td></tr>
</table>
</td>
<td>③ 지가계수(개인이 신청하는 일반업무에 적용)
㉮ 개인이 신청하는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다음의 공시지가 가격대별 계수를 본 품에 곱하여 계상한다. 대상 토지에 대한 적용 공시지가는 당해 연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지가자료를 이용하고, 시점은 지적측량의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자료가 없을 경우는 가장 유사한 토지가격대를 형성하는 인접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table>
<tr><th>공시지가
내용</th><th>3,000원 이하</th><th>3,001원 ~10,000원</th><th>10,001원 ~30,000원</th><th>30,001원 ~100,000원</th><th>100,001원 ~1,000,000원</th><th>1,000,000원 초과</th></tr>
<tr><td>계수</td><td>0.70</td><td>0.85</td><td>1.00</td><td>1.30</td><td>1.50</td><td>1.60</td></tr>
</table>
* 일반업무란 개인이 본인소유의 재산관리 등의 목적으로 측량을 신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집단지 · 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 · 연속지라 함은 도시계획명시측량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분
내용</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⑤ 측점계수
본 품은 5점의 도시계획 명시점을 복원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복원한 도시계획 명시점의 수가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분
내용</th><th>5점이하</th><th>6점~10점</th><th>11점~15점</th><th>16점~20점</th><th>21점~25점</th><th>26점~30점</th><th>30점초과시 매5점마다</th></tr>
<tr><td>계수</td><td>1.00</td><td>1.05</td><td>1.10</td><td>1.15</td><td>1.20</td><td>1.25</td><td>1.05×n</td></tr>
</table>
</td>
<td>· 토지의 공시지가 계수적용기준도입 (일반업무)

·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및 계수보완</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보완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도시계획선명시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⑥ 기타사항 · 본 품은 수치지역의 도시계획 명시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 도시계획 명시측량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1필지의 면적은 도시계획선에 의하여 구획된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⑥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도시계획선명시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측량성과도 1부 ⑦ 기타사항 · 본 품은 수치지역의 도시계획 명시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 도시계획 명시측량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1필지의 면적은 도시계획선에 의하여 구획된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근거 명시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보완		[계산예] ① 기준단가 수치지역인 시지역의 1필지 면적이 1,500㎡인 토지를 도시계획선명시측량 할 경우 ㉠기본계수 : 1.0 ㉡지역구분계수 : 0.40 ㉢면적계수 : 0.75 합계 : 2.15 = (㉠+㉡+㉢) 구분 / 내용 | 수량 | 단가 | 금액 지적기사 | 1.02×2.15=2.19 | w_1 | $W_1=2.19\times w_1$ 지적산업기사 | 1.51×2.15=3.25 | w_2 | $W_2=3.25\times w_2$ 지적기능사 | 0.78×2.15=1.68 | w_3 | $W_3=1.68\times w_3$ 계 | | | ΣW [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② 지가계수 적용단가 일반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의 경우 ㎡당 공시지가 2,500원, 수치지역인 토지 1필지 1,000㎡의 토지를 복원점 6점으로 복원하는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기본계수 : 1.0 ㉡면적계수 : 0.62 ㉢측점계수 : 0.05 ㉣지가계수 : -0.30 | 합계 : 1.37 = ㉠+㉡+㉢+㉣ 구분 / 내용 | 수량 | 단가 | 금액 지적기사 | 1.02×1.37=1.40 | w_1 | $W_1=1.40\times w_1$ 지적산업기사 | 1.51×1.37=2.07 | w_2 | $W_2=2.07\times w_2$ 지적기능사 | 0.78×1.37=1.07 | w_3 | $W_3=1.07\times w_3$ 계 | | | ΣW [결정단가] = ΣW + 직접경비 + 간접측량비 [주] 측량비 산출단가는 직접경비(현장여비 · 기계경비 · 재료소모품비) 및 간접측량비(제경비 · 기술료)를 별도 계상한다.	· 계산예 보완 -자격종목 통합 및 예시 구체화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44 지적불부합지조사 측량(도해)	보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합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비고
자료조사		(0.19)		1					(0.19)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3)	1	1				(0.03)	(0.03)				
등사		(0.06)		1					(0.06)				
준비도	작성	(0.04)			1					(0.04)			
	확인	(0.01)	1					(0.01)					
실지측량		0.36	1	1	1			0.36	0.36	0.36			
결과도작성		(0.16)		1	1				(0.16)	(0.16)			
면적측정		(0.08)		1	1				(0.08)	(0.08)			
성과도및조서작성		(0.12)		1	1				(0.12)	(0.12)			
점검		(0.04)	1					(0.04)					
성과인계		(0.05)	1					(0.05)					
소계	외업	0.36						0.36	0.36	0.36			
	내업	(0.78)						(0.13)	(0.64)	(0.40)			
합계		1.14						0.49	1.00	0.76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②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 구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합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비고
자료조사		(0.19)		1				(0.19)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3)	1	1			(0.03)	(0.03)			
등사		(0.06)		1				(0.06)			
준비도	작성	(0.04)		1				(0.04)			
	확인	(0.01)	1				(0.01)				
실지측량		0.36	1	2			0.36	0.72			
결과도작성		(0.16)		2				(0.32)			
면적측정		(0.08)		2				(0.16)			
성과도및조서작성		(0.12)		2				(0.24)			
점검		(0.04)	1				(0.04)				
성과인계		(0.05)	1				(0.05)				
소계	외업	0.36					0.36	0.72			
	내업	(0.78)					(0.13)	(1.04)			
합계		1.14					0.49	1.76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 구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0**	**1.62**	**1.75**	**1.90**	**2.13**	**2.23**	**1.73+0.1(n)**

②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내용	토지	임야
계수	1.12	1.36

·계수 구체적 표현

·축척별 개념을 지적공부등록 형태로 전환 →수수료체계 단순화, 국민의 이해증진(시행중)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0.00</td><td>0.40</td><td>0.54</td></tr>
</table>
④ 집단지 · 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 · 연속지라 함은 불부합지측량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내용
구분</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불부합지조사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면적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⑥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지역의 불부합지조사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td>
<td>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u>1.00</u></td><td><u>1.40</u></td><td><u>1.54</u></td></tr>
</table>
④ 집단지 · 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 · 연속지라 함은 불부합지측량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분
내용</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불부합지조사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면적측정부 1부
㉱ 면적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⑥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지역의 불부합지조사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u>·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u>
<u>· 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u></td>
<td>· 계수 구체적 표현

·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 근거 명시</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45-1 등록사항정정 측량 (도해)	보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작업별 \ 구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합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비고
자료조사		(0.79)		1					(0.79)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17)	1	1				(0.17)	(0.17)				
등사		(0.14)		1					(0.14)				
준비도	작성	(0.06)			1					(0.06)			
	확인	(0.11)	1					(0.11)					
실지측량		0.31	1	1	1			0.31	0.31	0.31			
결과도작성		(0.11)		1	1				(0.11)	(0.11)			
면적측정		(0.06)		1	1				(0.06)	(0.06)			
성과도및조서작성		(0.07)		1	1				(0.07)	(0.07)			
점검		(0.03)	1					(0.03)					
성과인계		(0.04)	1					(0.04)					
소계	외업	0.31						0.31	0.31	0.31			
	내업	(1.58)						(0.35)	(1.34)	(0.30)			
합계		1.89						0.66	1.65	0.61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②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축척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개 정

작업별 \ 구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합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비고
자료조사		(0.79)		1				(0.79)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17)	1	1			(0.17)	(0.17)			
등사		(0.14)		1				(0.14)			
준비도	작성	(0.06)		1				(0.06)			
	확인	(0.11)	1				(0.11)				
실지측량		0.31	1	2			0.31	0.62			
결과도작성		(0.11)		2				(0.22)			
면적측정		(0.06)		2				(0.12)			
성과도및조서작성		(0.07)		2				(0.14)			
점검		(0.03)	1				(0.03)				
성과인계		(0.04)	1				(0.04)				
소계	외업	0.31					0.31	0.62			
	내업	(1.58)					(0.35)	(1.64)			
합계		1.89					0.66	2.26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분 \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0**	**1.62**	**1.75**	**1.90**	**2.13**	**2.23**	**1.73+0.1(n)**

②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내용 \ 구분	토 지	임 야
계수	**1.12**	**1.36**

·계수 구체적 표현

·축척별 개념을 지적공부등록 형태로 전환 →수수료체계 단순화, 국민의 이해증진(시행중)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0.00</td><td>0.40</td><td>0.54</td></tr>
</table>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등록사항정정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내용
구분</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록사항정정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면적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⑥ 기타사항
・본 품은 도해지역의 등록사항정정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td>
<td>③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상한다.
<table>
<tr><th>구 분
내 용</th><th>군지역</th><th>시지역</th><th>구지역</th></tr>
<tr><td>계수</td><td><u>1.00</u></td><td><u>1.40</u></td><td><u>1.54</u></td></tr>
</table>
④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등록사항정정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분
내용</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⑤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록사항정정 측량결과도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면적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⑥ 기타사항
・본 품은 도해지역의 등록사항정정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u>・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u>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u>・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u></td>
<td>・계수 구체적 표현
・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 근거 명시</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45-2 등록사항정정 측량 (수치)	보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20)		1					(0.20)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8	1	1				(0.08)	(0.08)				
등사		(0.09)		1					(0.09)				
준비도	작성	(0.23)			1					(0.23)			
	확인	(0.21)	1					(0.21)					
실지측량		0.32	1	1	1			0.32	0.32	0.32			
결과도작성		(0.22)		1	1				(0.22)	(0.22)			
면적측정		(0.19)		1	1				(0.19)	(0.19)			
성과도및조서작성		(0.21)		1	1				(0.21)	(0.21)			
점검		(0.11)	1					(0.11)					
성과인계		(0.06)	1					(0.06)					
소계	외업	0.32						0.32	0.32	0.32			
	내업	(1.60)						(0.46)	(0.99)	(0.85)			
합계		1.92						0.78	1.31	1.17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구분 \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②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산한다.

내용 \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0.00	0.40	0.54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20)		1				(0.20)			( )는 내업임
계획준비		(0.08	1	1			(0.08)	(0.08)			
등사		(0.09)		1				(0.09)			
준비도	작성	(0.23)		1				(0.23)			
	확인	(0.21)	1				(0.21)				
실지측량		0.32	1	2			0.32	0.64			
결과도작성		(0.22)		2				(0.44)			
면적측정		(0.19)		2				(0.38)			
성과도및조서작성		(0.21)		2				(0.42)			
점검		(0.11)	1				(0.11)				
성과인계		(0.06)	1				(0.06)				
소계	외업	0.32					0.32	0.64			
	내업	(1.60)					(0.46)	(1.84)			
합계		1.92					0.78	2.48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구분 \ 가산횟수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0**	**1.62**	**1.75**	**1.90**	**2.13**	**2.23**	**1.73+0.1(n)**

·계수 구체적 표현

② 지역구분계수

본 품은 군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품을 계산한다.

내용 \ 구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계수	**1.00**	**1.40**	**1.54**

·계수 구체적 표현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
<td></td>
<td>보완</td>
<td>③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등록사항정정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내용
구분</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록사항정정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면적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⑤ 기타사항
・본 품은 수치지역의 등록사항정정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td>
<td>③ 집단지・연속지 체감계수
집단지・연속지라 함은 등록사항정정 필지수가 51필지이상 연속 및 집단되어 동일한 작업과정으로 계속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table>
<tr><th>구분
내용</th><th>50필지이하</th><th>51~100필지</th><th>101~500필지</th><th>501~1000필지</th><th>1000필지초과</th></tr>
<tr><td>계수</td><td>1.00</td><td>0.97</td><td>0.91</td><td>0.84</td><td>0.76</td></tr>
</table>
④ 성과작성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등록사항정정 측량결과도 및 계산부 1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사도 1부
㉰ 좌표면적계산부 1부
㉱ 면적조서 3부
㉲ 측량성과도 1부
⑤ 기타사항
・본 품은 수치지역의 등록사항정정 측량시 작업한 품이다
・측량할 토지의 축척은 1/500, 1/1000로 구분한다.
<u>・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u>
・작업상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를 별도 계상한다.
・도서지역 등의 측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실비를 별도 계상한다.
<u>・본 품의 외업에 필요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행자의 일비를 별도 계상한다.</u></td>
<td>・내용의구체화
자구수정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여비 계상 근거 명시</td>
</tr>
</table>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46 도면확대·축소	보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신도·축도	(0.19)		1					(0.19)				( )는 내업임
점 검	(0.07)		1					(0.07)				
합 계	(0.26)							(0.26)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0.00	0.62	0.75	0.90	1.13	1.23	0.73+0.1(n)

② 축척계수

본 품은 축척 1/60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축척이 다를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축척별 / 구분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계수	0.00	0.23	0.35	0.37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에 의하여 작업한 품이다.

·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신도·축도	(0.19)		1				(0.19)			( )는 내업임
점 검	(0.07)		1				(0.07)			
합 계	(0.26)						(0.26)			

[주] ① 면적계수

본 품은 1필지당 토지는 3,000㎡, 임야는 10,00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을 적용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가산횟수 / 구 분	0회	1	2	3	4	5	6이상
계수	**1.00**	**1.62**	**1.75**	**1.90**	**2.13**	**2.23**	**1.73+0.1(n)**

② 등록계수

지적공부 등록지(토지, 임야)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구 분 / 내 용	토 지	임 야
계수	1.12	1.36

③ 기타사항

· 본 품은 도해에 의하여 작업한 품이다.

·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비 고

· 계수 구체적 표현

· 축척별 개념을 지적공부등록 형태로 전환 →수수료체계 단순화, 국민의 이해증진(시행중)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계상근거 명시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47 조서작성	보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01)			1					(0.01)			( )는 내업임
조서작성	(0.01)			1					(0.01)			
점검	(0.01)		1					(0.01)				
성과인계	(0.01)		1					(0.01)				
합계	(0.04)							(0.02)	(0.02)			

[주] ①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면적조서 1부
② 기타사항
· 본 품은 일단의 토지개발사업지구, 도로편입지, 하천편입지 등에 대한 전필별 조서작성에 따른 작업 품이다.
· 축척은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로 구분한다.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1일당 지적산업기사	1일당 지적기능사	1일당 인부	합계 지적기사	합계 지적산업기사	합계 지적기능사	합계 인부	비고
자료조사	(0.01)		1				(0.01)			( )는 내업임
조서작성	(0.01)		1				(0.01)			
점검	(0.01)		1				(0.01)			
성과인계	(0.01)		1				(0.01)			
합계	(0.04)						(0.04)			

[주] ①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면적조서 1부
② 기타사항
· 본 품은 일단의 토지개발사업지구, 도로편입지, 하천편입지 등에 대한 전필별 조서작성에 따른 작업 품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조서용지는 A4횡 사이즈 10횡(또는 줄)을 기준 서식으로 한다.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계상근거 명시
· 조서작성 적용기준 서식명시 (축척구분 불요)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48 도면복사(A2)	보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종목통합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산업기사

현 행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합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비고
자료조사	(0.01)			1					(0.01)			( )는 내업임
작업계획	(0.01)		1	1				(0.01)	(0.01)			
복사	(0.28)		1	1				(0.28)	(0.28)			
복사대조	(0.01)		1					(0.01)				
성과인계	(0.01)		1					(0.01)				
합계	(0.32)							(0.31)	(0.30)			

①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도면사본 1부

②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도 또는 임야도면을 전자복사기에 의하여 복사한 품이다.

개 정

구분 / 작업별	일수	인원수 1일당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합계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인부	비고
자료조사	(0.01)		1				(0.01)			( )는 내업임
작업계획	(0.01)		2				(0.02)			
복사	(0.28)		2				(0.56)			
복사대조	(0.01)		1				(0.01)			
성과인계	(0.01)		1				(0.01)			
합계	(0.32)						(0.61)			

① 성과품
본 품에는 다음의 성과작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 도면사본 1부

② 기타사항
본 품은 지적도 또는 임야도면을 전자복사기에 의하여 복사한 품이다.
· 본 품에 사용되는 기계경비 및 재료소모품비는 별도 계상한다.

· 기계경비, 재료소모품비 계상근거 명시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 측량		21-1-1 제1차기준점측량 [주]⑩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1-1 제1차기준점측량 [주]⑩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21-1-2 제2차기준점측량 [주]⑨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1-2 제2차기준점측량 [주]⑨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21-1-3 GPS에 의한 기준점측량 [주]⑧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1-3 GPS에 의한 기준점측량 [주]⑧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21-3-1 1급기준점 측량 [주]⑧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⑨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3-1 1급기준점 측량 [주]⑧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⑨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21-3-2 2급기준점 측량 [주]⑧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⑨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3-2 2급기준점 측량 [주]⑧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⑨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21-3-3 3급기준점 측량 [주]⑧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⑨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3-3 3급기준점 측량 [주]⑧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⑨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21-4 1급기본수준측량 [주]⑫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4 1급기본수준측량 [주]⑫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21-5 2급기본수준측량 [주]⑫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5 2급기본수준측량 [주]⑫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21-6 1급수준측량 [주]⑪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⑫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6 1급수준측량 [주]⑪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⑫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21-7 2급수준측량 [주]⑪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⑫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7 2급수준측량 [주]⑪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⑫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21-8 지형현황 (‘08보완) [주]⑥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⑦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8 지형현황 (‘08보완) [주]⑥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⑦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21-9 하천측량 [주]⑩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⑪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9 하천측량 [주]⑩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⑪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 측량		21-10 노선측량(철도, 도로신설) [주]⑫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10 노선측량(철도, 도로신설) [주]⑫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21-11 시가지 노선측량 [주]⑧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⑨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11 시가지 노선측량 [주]⑧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⑨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21-12 택지조성측량 [주]⑥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⑦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12 택지조성측량 [주]⑥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⑦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21-13 구획정리확정측량 [주]⑤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⑥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13 구획정리확정측량 [주]⑤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⑥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21-14 도로대장측량 [주]⑦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⑧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14 도로대장측량 [주]⑦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⑧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21-15 용지측량 [주]⑩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⑪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15 용지측량 [주]⑩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⑪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21-16 수도노선측량 [주]③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16 수도노선측량 [주]③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21-17-3 해도제작 [해설]⑫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 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	21-17-3 해도제작 [해설]⑫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21-18 항공사진측량 5. 항공사진 촬영기준 계산시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코스 [주]⑤ 건설교통부장관이 계기비행 6. 항공사진 촬영계획 [주]⑥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⑦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18 항공사진측량 5. 항공사진 촬영기준 계산시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코스 [주]⑤ 국토해양부장관이 계기비행 6. 항공사진 촬영계획 [주]⑥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⑦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21-21 대공표지 및 자침 [주]⑨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21 대공표지 및 자침 [주]⑨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 측량		21-22 세부도화 [주]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22 세부도화 [주]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21-23 사진 기준점측량 [주]⑧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23 사진 기준점측량 [주]⑧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21-24 수치지도작성 1. 수치도화 [주]⑤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 수동입력 [주]⑨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3. 자동입력 가. 자동독취 [주]⑤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나. 벡터편집 [주]⑩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4. 정위치 편집 ⑥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5. 도면제작 편집 가. 1:1 편집 [주]⑪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⑫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나. 축소편집 [주]⑧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다. 자동 지도제작 [주]⑧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6. 구조화 편집 가. 수치지형도 [주]⑧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나.수치지형도(Ver 2.0) (1) 기존 수치지형도 활용 [주]⑦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24 수치지도작성 1. 수치도화 [주]⑤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2. 수동입력 [주]⑨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3. 자동입력 가. 자동독취 [주]⑤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나. 벡터편집 [주]⑩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4. 정위치 편집 ⑥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5. 도면제작 편집 가. 1:1 편집 [주]⑪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⑫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나. 축소편집 [주]⑧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다. 자동 지도제작 [주]⑧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6. 구조화 편집 가. 수치지형도 [주]⑧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나.수치지형도(Ver 2.0) (1) 기존 수치지형도 활용 [주]⑦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항목	구분	현 행	개 정	비 고
21. 측량		(2) 신규 작업 [주]⑦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8. 공통주제도 작성 나. 수정편집 [주]⑦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9. 수치표고자료 가.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한 방법 [주]⑧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10. 영상지도 제작 가. 항공사진자동독취 및 DB구축 [주]⑥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나. 영상지도 제작 [주]⑨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11.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주]② 건설교통부에서	(2) 신규 작업 [주]⑦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8. 공통주제도 작성 나. 수정편집 [주]⑦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9. 수치표고자료 가.항공레이저측량에 의한 방법 [주]⑧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10. 영상지도 제작 가. 항공사진자동독취 및 DB구축 [주]⑥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나. 영상지도 제작 [주]⑨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11.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주]② 건설교통부에서	기관명칭 변경
		21-25 건물 및 지상물체 항공사진「판독작업」 [주]⑦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⑧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25 건물 및 지상물체 항공사진「판독작업」 [주]⑦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⑧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21-26 지도제작(기본도) 1.지리조사 가. 지형도제작 [주]① 건설교통부령 지도도식규정 나. 수치지도 제작 [주]⑧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⑨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건설교통부령 제17호) 2. 편집 및 제도 나. 착묵 [주]⑥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1-26 지도제작(기본도) 1.지리조사 가. 지형도제작 [주]① 건설교통부령 지도도식규정 나. 수치지도 제작 [주]⑧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⑨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건설교통부령 제17호) 2. 편집 및 제도 나. 착묵 [주]⑥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기관명칭 변경

<table>
<tr><th>항목</th><th>구분</th><th>현 행</th><th>개 정</th><th>비 고</th></tr>
<tr><td rowspan="3">21. 측량</td><td></td><td>21-27 토지이용현황도 제작
1. 지리조사
[주]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 편집 및 제작
[주}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td><td>21-27 토지이용현황도 제작
1. 지리조사
[주]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
2. 편집 및 제작
[주}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td><td>기관명칭 변경</td></tr>
<tr><td></td><td>21-<u>23</u> 사진기준점측량</td><td>21-<u>22</u> 사진기준점측량</td><td>편제수정</td></tr>
<tr><td></td><td>21-24 수치지도작성
2. 수동입력
③.㉯ 레이어별 작업비율(단위:%)
<table>
<tr><th>지형별
레이어별</th><th>시가지</th></tr>
<tr><td>도로,철도,시설물</td><td>23.7</td></tr>
<tr><td>하 천</td><td><u>4.7</u></td></tr>
<tr><td>건 물</td><td>48.7</td></tr>
<tr><td>지 류</td><td>6.5</td></tr>
<tr><td>지 형</td><td>11.3</td></tr>
<tr><td>행정경계 및 주기</td><td>7.1</td></tr>
<tr><td>계</td><td>100.0</td></tr>
</table></td><td>21-24 수치지도작성
2. 수동입력
③.㉯ 레이어별 작업비율(단위:%)
<table>
<tr><th>지형별
레이어별</th><th>시가지</th></tr>
<tr><td>도로,철도,시설물</td><td>23.7</td></tr>
<tr><td>하 천</td><td><u>2.7</u></td></tr>
<tr><td>건 물</td><td>48.7</td></tr>
<tr><td>지 류</td><td>6.5</td></tr>
<tr><td>지 형</td><td>11.3</td></tr>
<tr><td>행정경계 및 주기</td><td>7.1</td></tr>
<tr><td>계</td><td>100.0</td></tr>
</table></td><td>단순오기 수정</td></tr>
</table>